

“


2017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얼마나 바꿨나?**

”

2017. 11. 29.(수) 14:00~16:30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지하 1층)

주 최 :  여성가족부

주 관 :  여성가족부 지정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강원도의회 양성평등연구회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7년 양성평등 기반구축 포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 얼마나 바꿨나?

| 일정표 |

13:30~14:00 등록

사회 : 김기철 (강원도의회 도의원 · 양성평등위원회 간사)

14:00~14:10 개회식

대회사 : 서영주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원장)

환영사 : 김금분 (강원도의회 도의원 · 양성평등연구회 회장)

좌장 : 신경아 (강원도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장)

14:10~15:00 50분

*발표 1 :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현황 및 발전 방안

• 김들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발표 2 :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 방안

• 조연숙 (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

15:00~16:00 60분

*토론

• 곽영승 (강원도의회 의원)

• 김복자 (강릉시의회 의원)

• 정유선 (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 손인주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

• 전순아 (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16:00~16:30 질의 응답 및 토론

16:30 마무리 및 폐회

CONTENTS

I. 주제발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현황 및 발전 방안** 5
_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23
_ 조연숙(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

II. 토 론

1.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 65
_ 곽영승(강원도의회 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제시** 69
_ 김복자(강릉시의회 의원)
3. **강원지역의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몇가지 제언** 73
_ 정유선(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컨트)
4.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및 개선대책** .. 77
_ 손인주(강원도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
5.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장의 고민과 제언** 85
_ 전순아(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I. 주제발표

1.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현황 및 발전 방안

_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2.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_ 조연숙(젠더와정책연구소 소장)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연왕 및 발전방안

2017. 11. 29

김들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목 차

- I. 우리나라 정책담당자의 성 인지 감수성은?
- II.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환류 근거
- III.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현황
- IV.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발전방안: 쟁점과 방안

I. 우리나라 정책담당자의 성 인지 감수성은?

1. 성 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요



◆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국내 최초로 에스컬레이터 안전 홍보물 지하철에 부착(시범 실시), 8개 안전규칙 제시

자료: 안전보건공단, 안전정보, 2013.11.28

(<http://www.safetynet.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8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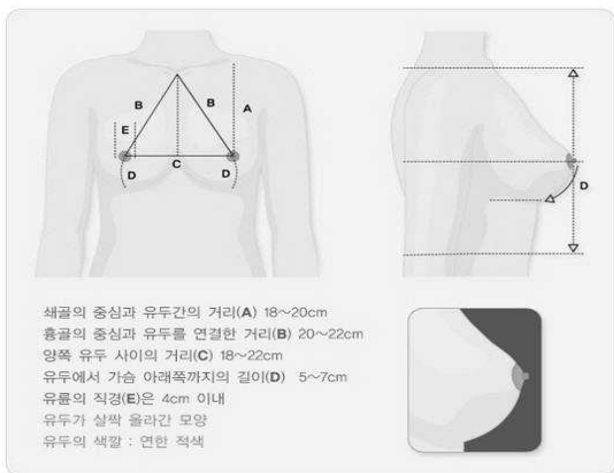
◆ '여성비하 승강기 안전수칙'

자료: 뉴시스, 2014.5.13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512_0012911326&cID=10404&pID=10400)



© 연구자별

1. 성 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요



국가건강정보포털
 (health.mw.go.kr),
 '여성의 아름다운 가
 슴의 조건'
 * 현재 삭제



1. 성 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요



❖ 보건복지부. 2014. 12. 피임캠페인 포스터 논란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luxion0912&logNo=220203018006> 2014. 12. 8
<http://www.bbc.com/news/blogs-news-from-elsewhere-30377614>, 2014. 12. 8

1. 성 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요

1년 차 새댁의 첫 명절
'설날' 준비 이야기!



생활

정무 공식 정책홍보 블로그 '명절준비'에 올라왔다 비싼이 묻어지지 사제간 계시문의 첫 화면.

수정

온라인
홍보물
GIA 대상
제외
(2016)

1년차 부부의 설 준비
**의미있고 알뜰한
명절 준비 완료!**



생활

방송 평등한 부부의 시점에서 다시 작성한 블로그 글의 첫 화면.

◆ 문화체육관광부 공식 블로그 2016.02.03(수) , '1년차 새댁의 첫 명절 준비'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8a01a43efd29422b9e5b52983319456b>

© 연구자팀

1. 성 인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아요



광주 동부경찰서 외
벽에 걸린 범죄신고
홍보 현수막.(광주여
성민우회 페이스북
캡처) 2016.6.7/뉴스
1

© 연구자팀

2. 성인지 감수성 / 성 인지 정책이란?

성 인지성 (Gender Sensitivity)

- . 사회 속에서 여성과 남성의 관계 및 상황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할 수 있는 안목과 기술적 능력: 성 역할 고정관념, 여성성, 남성성
'남성=생계 부양자', '여성=가사, 육아 돌봄 책임자' /
'남성=리더십, 강함', '여성=약함' ...

성 인지 정책

- . 정책의 기획-집행-평가의 전 과정에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요구(needs)와 삶의 경험, 특성과 차이를 반영
- . 여성, 여성적인 것의 가치를 재평가, 여성의 노동과 활동 가치인정

9

II. 성별영향분석평가 목적
및 환류 근거

1. 성별영향분석평가 개념

성별영향분석평가

-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 전문연구자가 여성의 지위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 사업을 특정해서 심층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정책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표명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11

2.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법적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9조(분석평가결과의 반영)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분석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 매년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분석평가의 결과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2.3>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12

2.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법적근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6조(분석평가결과의 제출)

-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분석평가의 결과 및 그 분석평가를 정책에 반영한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 집행이 수반되는 대상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관별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보고

출처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13

3. 제도도입 전제

“우리 사회는 성 차별적이다”

“우리 사회는 성 평등하지 않다”

“성별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신체적 특성에 따른 정책요구가 다를 수 있다”

14

4.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 정확한 개념 정의 부재

(지침) :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정책개선 과제를
중장기 계획, 사업에 반영하는 것(분석평가 지표)

(법) : '분석평가결과를 정책에 반영',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

환류 점검 수준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 반영 여부 점검=> 반영 이후 성 평등 개선 효과

15

III.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현황

1.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체계

■ 점검방법

매년 2월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년도에 실시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제출 받음(기관별 종합결과보고)

■ 점검대상

- 전년도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개선의견 통보과제
- 추적점검: 법령(개선이행 완료될 때까지)
 계획, 사업(2년간 추적 점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개선이행 완료 될 때까지)

17

1. 여성가족부: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체계

■ 점검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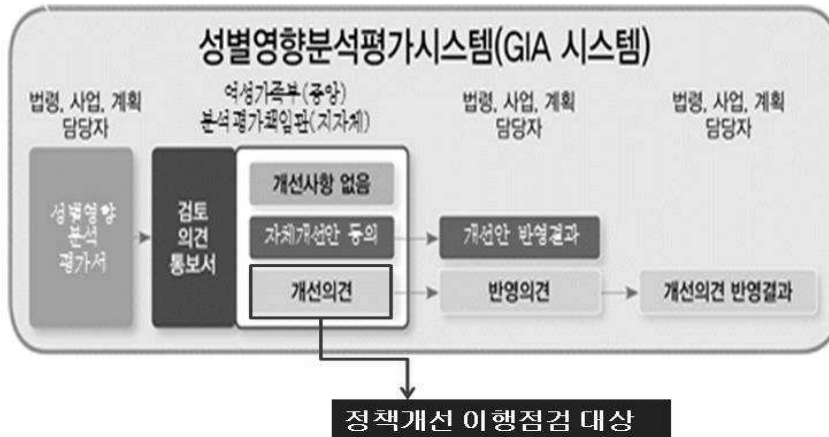
- 정량화된 자료: 개선의견 수용률
- 정성적 자료: 정책개선 모범사례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발간

- 현재 고민 : 체계적인 정책개선 이행점검 방법 및 개선효과 파악을 어떻게 할 것인가?

18

1.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체계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관리 체계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19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별 추진 결과

(단위: 개(%))

구분 (대상기관 수)	과제 수	원안동의	자체개선안 동의	개선의견	개선의견 수용률		기타
					수용	비수용	
전체(304)	34,468(100.0)	21,202(61.5)	4,576(13.3)	3,215(9.3)	2,706(84.2)	5,475(15.9)	
법령	20,186(100.0)	12,436(61.6)	750(3.7)	1,673(8.3)	1,372(82.0)	5,327(26.4)	
계획	259(100.0)	134(51.7)	41(15.8)	78(30.1)	72(92.3)	6(2.3)	
사업	14,023(100.0)	8,632(61.6)	3,785(27.0)	1,464(10.4)	1,262(86.2)	142(1.0)	
중앙 행정 기관 (44)	계	2,066(100.0)	1,799(87.1)	62(3.0)	67(3.2)	61(91.0)	138(6.7)
	법령	1,929(100.0)	1,725(89.4)	20(1.0)	48(2.5)	45(93.7)	136(7.1)
	계획	24(100.0)	17(70.8)	0(0.0)	6(25.0)	6(100.0)	1(4.2)
	사업	113(100.0)	57(50.4)	42(37.2)	13(11.5)	10(76.9)	1(0.9)
지방 자치 단체 (260)	소계	32,402(100.0)	19,403(59.9)	4,514(13.9)	3,148(9.7)	2,645(84.0)	5,337(16.5)
	법령	18,257(100.0)	10,711(58.7)	730(4.0)	1,625(8.9)	1,327(81.7)	5,191(28.4)
	계획	235(100.0)	117(49.8)	41(17.4)	72(30.6)	66(91.7)	5(2.1)
	사업	13,910(100.0)	8,575(61.6)	3,743(26.9)	1,451(10.4)	1,252(86.3)	141(1.0)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0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추적점검: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2015, 2016)

(단위: 개, %)

구분	전체	과제			기관				
		법령	계획	사업	중앙	광역	기초	교육청	
2015	점검대상 과제	2,743	1,668	28	1,047	82	470	2,180	11
	개선완료	1,605	1,257	11	337	61	245	1,293	6
	정책개선 이행률 ^{a)}	(58.5)	(75.4)	(39.3)	(32.2)	(74.4)	(52.1)	(59.3)	(54.5)
2016	점검대상 과제	2,706	1,372	72	1,262	61	370	2,268	7
	개선완료	1,248	941	28	279	34	171	1038	5
	정책개선 이행률 ^{a)}	(46.1)	(68.6)	(38.9)	(22.1)	(55.7)	(46.2)	(45.8)	(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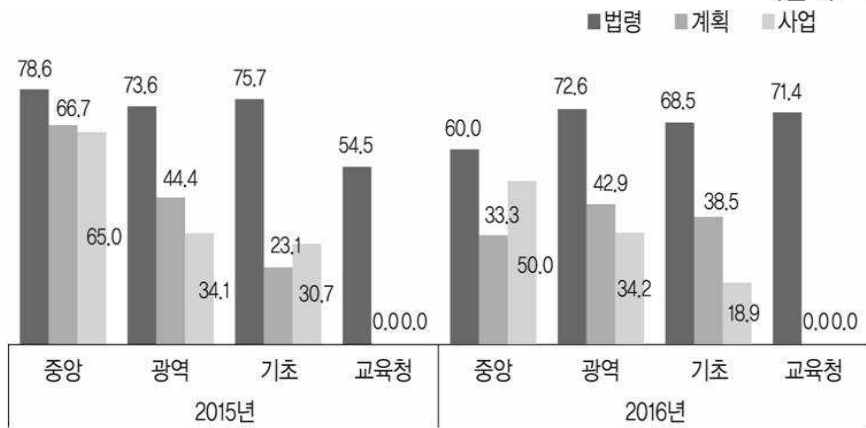
주 : a) 정책개선 이행률(%)=점검연도 기준으로 개선완료 수/점검대상 과제 수×100
 점검대상 과제 수: 검토의견 개선의견 중 해당기관이 이를 수용하였지만 2017.5까지 개선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1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기관유형별 2015년~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률

(단위: %)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2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2013년~2015년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권고 이행점검 결과

(단위: 개, %)

특정평가 수행연도	개선권고 과제(A)	2013년 완료	2014년 완료	2015년 완료	2016년 완료	2017년 완료 (예정 포함)	완료 과제 합계(B)	미완료과제 (C=A-B)
2013	10	2	3	4	0	1	10(100.0)	0
2014	22	-	-	6	3	2	11(50.0)	11
2015	36				10	2	12(33.3)	24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3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지방세 특례제한법(행정자치부, 2016):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근거 규정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신설>	<p>제115조의2(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 이 조 및 제118조제1항제1호에서 "경력단절 여성"이라 한다)과 2017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하 이 조에서 "재고용"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재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한 대동경령으로 정하는 인건비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인도의 개인지방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만 해당한다)에서 공제한다.</p> <p>1.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동경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2. 대동경령으로 정하는 임신·출산·육아의 사유로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하였을 것</p> <p>3. 해당 중소기업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p> <p>4. 해당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나 그와 대동경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p> <p>② 제항을 적용받으려는 중소기업은 대동경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한다.</p>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4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서울특별시 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서울시, 2016)
산업단지 여성기업 참여활성화를 위한 개선

개정전	개정후
<p>「서울특별시산업단지개발및부유권역등의설치·운영에 관한 조례」</p> <p>제10조(참여위원회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한다.</p> <p>〈신설〉</p> <p>〈신설〉</p>	<p>「서울특별시산업단지개발 및 활성화 지원조례」</p> <p>제10조(참여위원회 구성) 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30명 이하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을 2명 이상으로 구성한다.</p> <p>제18조(산업단지 지원) ①(생략)</p> <p>1.~2. (생략)</p> <p>② 시정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외에 기업사설, 문화시설, 복지시설, 주거시설, 기업지원시설 등을 조성·확충하기 위한 용·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 시정은 제2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외의 시설조성·확충지원 시 「서울특별시 생활환경기준」에 따른 생활환경 도시공간 및 시설조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제23조(여성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산업단지법 시행령 제42조의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해부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공사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p> <p>1.~5. (생략)</p> <p>② 제항에 따라 산업시설 공사를 우선 분양받는 대상기업은 제8조에 따른 참여위원회 참여를 거쳐 선정한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의 경우에도 예외할 수 있다.</p>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5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해양수산부, 2016)
사업 대상자 선정 방식 개선과 여성 대상 교육 실시, 평가지표 반영

평가전	평가후
<p>·원양어업, 근해어업, 양식가공 등의 어업 활동(경제효과가 크고 고소득)에는 남성어업인이, 채취와 같은 어업 활동에는 여성어업인이 주로 참여</p> <p>·전문 교육 과정 수혜자의 성별 격차 큼(남성 91.3%, 여성 8.7%).</p>	<p>·어촌개발리더과정 대상자 선정 시 여성이 50% 이상 되도록 추진</p> <p>·대상사업 선정 평가배점, 내역사업 성과평가에 여성수혜비율 반영</p> <p>- 대상사업(공모) 선정 평가배점에 여성어업인 참여율 점수 상향 반영</p> <p>- 기타 내역사업 성과평가 항목에 여성어업인 교육 참여실적 반영 (지자체 주관 교육, 어업인 대상 평생교육, 어업인 단체 주관 교육 등)</p>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6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아산시 사회적 경제 육성 2차 기본계획(2016~2020)충청남도 아산시, 2016) 정책 추진 방향에 '성인지 관점의 사회적경제 모델 발굴 추진' 명시

평가전	평가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 아산시 사회적 경제 사업 참여자 현황에서 여성은 근로자 참여 비율이 높으며(공공부 인증 사업 여성근로자 55%, 충남형 예비사업 여성근로자 68%, 협동조합 여성근로자 88%, 이상 대표자 비율은 35% 수준임) 여성인 다수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영역의 일 자리의 제안금(자리 경쟁 강해, 여성의 경제적 취약성)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별분리 통계활용하여 현황 재분석 사회적경제조직(무당 대표자 성별, 업종별, 근로자 성별) 통계분석 취약계층유형별근로자현황 통계분석 사회적경제 생태 조사(산(산)업 시 매년(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대상 여성대표자, 취약계층근로자)현황 분석 2016년~2016년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위원 중 여성위원 50% 위촉 전체 50개 사업중 9개 사업에 여성특화사업계획 아산시 자체 사설비 지원사업, 농림부 지원(농촌생활권 선도 사업 추진 시 여성 참여 촉진 지원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성격경 추진시 역량 향상 범주에 (여성창업인, 임산/출산/육아 포함)하여 인적·물적 지원 순환형 정책 수립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구성 시 실천 가능한 여성친화형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 가바스 운영추진 마을기업 요양원등과 같이 돌봄 마을기업으로 추진으로 일·가정 양립 기반 확대 아산시 자체 방송홍보 사업, 사회적 경제 박람회사업 추진 시 여성 사회적 기업 부스 설치 및 운영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7

2. 여성가족부 :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

❖ “영재교육운영”(강원도교육청, 2016)

영재 교육개발 분야에서 성별 불균형 상태 개선

평가전	평가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에서 전반적으로 남학생 비율이 높고, 전공 별 성별 불균형 현상이 큼. 수학과 과학 영역 은 남성 비율이 높으며(2014년 도 과학 남성 6%, 2015년도 남성 6%) 인문사회 영역 은 여성 비율이 높음(2014년도 9%, 2015년도 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원도영재교육진흥위원회 위원위원 구성 시 성별을 균형 있게 위촉 지역개발 중심(남성들이 선호하는 수학·과학·정보 분야)의 학급 이 대부분으로 관중되어 있는 영재교육분야의 다양화 영재 선발에 있어 성별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한 성이 40%에 미달 할 경우 그만큼 추가 선발 영재교육 홍보물 제작 시 성별 고정관념 또는 불필요한 성별 특성을 경회시키는 내용이 있는지 검토 영재교육기관별 영재교육 대상 학생 오리엔테이션 및 리더십 교육에서 영재로서의 인성교육, 양성평등교육 실시

자료: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 분석 결과보고서 28

3. 지방자치단체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서울시

- ❖ 누가 : 서울시 기관담당부서 → 각 업무담당부서
- ❖ 방법 : 연초에 이행점검표 발송하여 서면 점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새로운 성 인지적 정책개선안 제안)

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문의(2017.11.20)

29

3. 지방자치단체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인천시

- ❖ 인천여성가족재단: 시민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모니터링 실시
 - 2017년 : 130명 모집, 교육, "여성·아동·주거 안전, 노인생활 안전 "
 - 2018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예정

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문의(2017.11.20)

30

3. 지방자치단체 정책개선 이행점검 사례

경기도

- ❖ **누가:**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수탁연구과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연구자+컨설턴트(총 4명)
- ❖ **대상:** 도청이 추진한 법령,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자체개선과제**,
개선의견 전수 점검
시군: 공통과제 중심으로 점검(시군별 각 5~6개)
- ❖ 2014년~ 매년 실시

자료: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관계자 문의(2017.11.16)

31

IV.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발전방안: 쟁점과 방안

1.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관련 쟁점

- ❖ 점검 주체 : 기관담당부서 공무원?, 시민? 민관협력 모니터링단?
- ❖ 점검 대상 : 개선의견 통보?, 자체개선과제?
- ❖ 추적점검 대상과 추적 기간?
- ❖ 점검 수준 : 개선이행 여부?, 개선이행 결과 성평등 효과?
- ❖ 점검 도구 : 점검지표
- ❖ 점검 방법 : 서면확인? 증빙자료 제출 요청?, 현장방문 확인?
????

33

2. 성별영향분석평가 환류 발전방안

- ❖ 점검 주체 : 기관담당부서 공무원 + 시민 협력체계 구축,
시민 모니터링단 구성, 교육, 운영, 전문성 강화
- ❖ 환류 점검 위한 예산 확보
-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담당부서 전담인력 배치
- ❖ 점검 대상 : 개선의견 통보, 자체개선과제
- ❖ 추적점검 대상과 추적 기간:(여가부 사례: 슬라이드 17 참조)
- ❖ 점검 수준 : 개선이행 여부(O), 개선이행 결과 성평등 효과(?)
- ❖ 점검 도구 : 점검지표(점검대상 및 점검 수준에 따라 설정)
- ❖ 점검 방법 : 매년 1회, 서면확인+ 증빙자료+ 현장방문 확인
- ❖ 양적 위주의 분석평가 실시 → 양적 지양, 정책개선 환류 강화
????

34

감사합니다.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결과 및 개선방안

조연숙 (젠더와 정책연구소장)

I 서론

| 1 |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강원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2012년 대상영역인 법령, 계획,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수는 757개, 2013년 1,019개, 2014년 1,522개, 2015년 2,032개로 계속 증가하였다가 2016년 1,950개 과제로 약 80개 과제가 감소하였으나¹⁾ 과제 수로만 본다면 제도의 급속한 확산현상을 알 수 있다(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7).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제정·시행이후 5년을 지나면서 제도의 정착화와 함께 과연 모든 정부 정책과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제기가 자주 제기되었다. 추진실적 추이에서 볼 수 있듯이 대상과제의 양적 확대에 말미암아 제도시행의 성과로 제시되고 있지만, 실제 시민이 체감하는 성평등 인식은 크게 변화되지 않았다는 문제인 것이다. 이는 제도시행 초기에는 정부 정책이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공무원과 시민사회, 여성 NGO 단체에게 성 인지적 관점의 반영이라는 여성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확산하는데 주로 초점이 두어졌기 때문이며 그 과정에서 모든 정부 정책과 사업에 이 관점을 적용하는데만 집중하였지 실질적 개선여부를 점검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적 안정기로 접어들면서 과연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당초 목적으로 하는 정부정책이나 사업에 과연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삶의 변화와 보다 평등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1) 2015년 대비 2016년 과제수의 감소는 법령 과제수의 감소에서 기인함. 여성가족부의 각년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는 전국 17개 시도 전체의 공통된 현상으로 전국적으로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는 2015년 대비 평균 16.6% 감소(21,413과제 →17,863과제)하였음.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중앙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정책개선이 제안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이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된 개선과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손영숙외, 2015; 임우연·이경하, 2015 등). 이와 같은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이행점검 활동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시행이 단지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인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점검과정으로 필요성이 있다.

| 2 |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다음 두 가지로 제시할 수 있음

첫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의 목적은 다양한 대상영역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절차나 제도수행이라는 형식적 과정에 머물지 않고, 제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성평등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데 있다. 대상영역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위해서는 대상과제 선정,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표 작성, 분석평가서 작성·제출, 검토의견서 작성 및 제출, 이행결과보고서 제출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복잡한 과정을 통해 도출되고 제안된 개선의견이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둘째, 대상영역별, 구체적으로 과제별로 정책개선이 이뤄진 경우, 어떠한 내용의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 성 평등은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지는 것이지만 '평등'의 차원이나 측면에 다양하며 복잡하고 대상영역별, 정책이나 사업 분야별 성 평등 수준의 차이가 다양할 수 있는데, 어떠한 측면에서 개선이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3 | 연구 방법 및 추진절차

가. 문헌검토 및 실적자료 등 통계 분석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을 위해서 그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실적에 대한 검토, 이행점검에 관한 중앙 및 타 시도의 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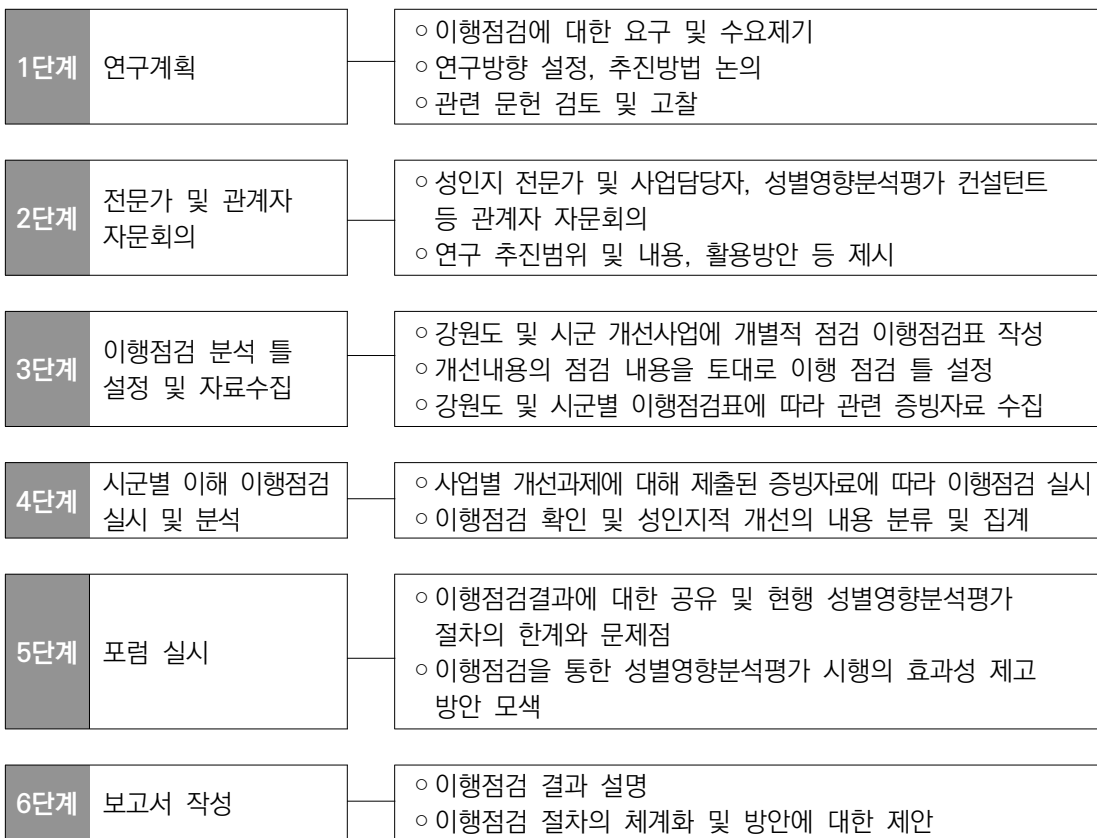
나. 전문가 자문회의 및 연구진 회의

본 연구의 분석범위 및 방향 설정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성 주류화 정책 전문가, 현장의 시·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및 관련 공무원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이행점검의 필요성과 활용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특히 이행점검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도구로서 지속가능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 체계를 마련하여 연속성을 갖는 것이 필요함이 제시되었다.

연구진 회의를 통해서 이행점검 분석 틀을 설정하였다. 이행점검의 의미가 과연 제안된 개선과제가 실제 이행으로 실천함에 있어서 성인지성을 반영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성인지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자 개선내용을 분류하고 범주화하여 분석틀을 도출하였다.

다. 연구추진 절차

〈그림 1〉 연구추진 절차



라.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2016년 강원도 광역 및 1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대상이 된 법령, 사업 중 담당자가 자체개선안을 제출하거나 주무부서(여성정책 부서)에서 검토의견으로 '개선의견'을 통보한 데 대해 담당자가 '수용'(일부 수용 포함)으로 반영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령은 자체개선안 33개 과제, 개선의견 통보된 274개 과제를 합산한 307개 과제가 점검대상이었다. 사업은 자체개선안 162개 과제와 개선의견 수용(일부 수용 포함) 73개 과제를 합한 235개 과제에서 연구진의 이행점검표 작성 과정에서 점검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15개 과제를 제외한 220개 과제가 최종 점검대상이었다.

계획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16년 2개 과제가 수행되었으며 1건은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개선의견이 통보된 과제는 1개(강원도의 <제3차 강원도교통안전기본계획>)이기에 별도로 분석하지 않았다. 해당 과제는 계획의 비전 및 목표의 재설정 및 자료조사 및 분석에서 집단을 세분화하여 성, 연령, 장애유무에 따른 교통안전을 고려하여 분석하도록 개선의견을 통보한 결과 정책개선안을 '수용'하고 이행하였다.

II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및 이행점검 분석틀

| 1 |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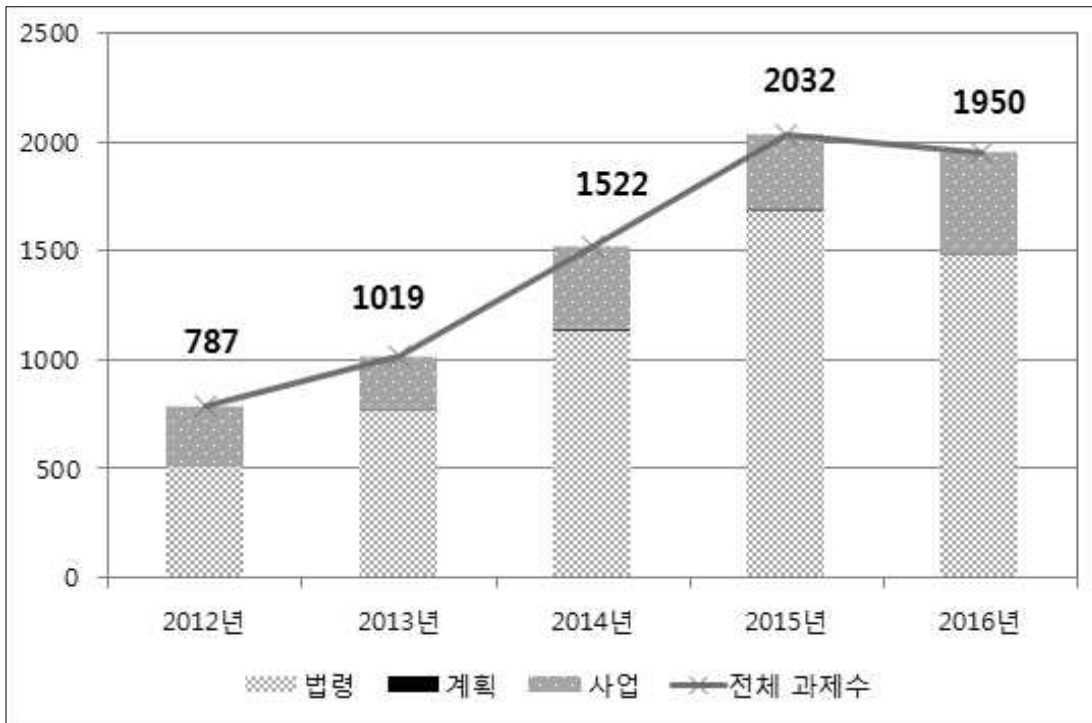
가. 총괄 현황

□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추진현황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대상영역의 성별영향 분석평가 과제 수는 다음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12년 총 과제 수는 787개, 2013년 1,019개로 전년도에 비해 약 30%가 증가하였고, 이듬해인 2014년에는 2013년에 비해 다시 약 50%p 증가한 1,522개, 2015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33.5% 상승한 2,032개로 매해 30%이상씩 증가하였다.

2016년에는 이와 같은 급증 현상이 조금 주춤하여 전년도인 2,032개에 비해 82개 감소한 1,950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이뤄졌다. 이렇게 과제 수가 감소하게 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추진의 양적인 성장이 곧 성평등한 사업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일부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추이(2012~2016)



-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6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결과 보고서, p. 18.

강원도(광역)는 2012년 제도시행 초기 총 48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16년 133개까지 증가하여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2.8배에 이르는 증가를 보였으며, 18개 시군 합계가 2012년 739개 2016년 총 1,901개로 5년 전과 비교하여 약 2.5배 증가하여 대상과제 수의 양적 증가를 볼 수 있다. 반면 교육청의 경우는 2012년 총41개 과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였으나 2016년에는 16개에 불과해 5년 전과 비교하여 3분의 1수준으로 감소하는 반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표 1〉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총괄현황

단위 :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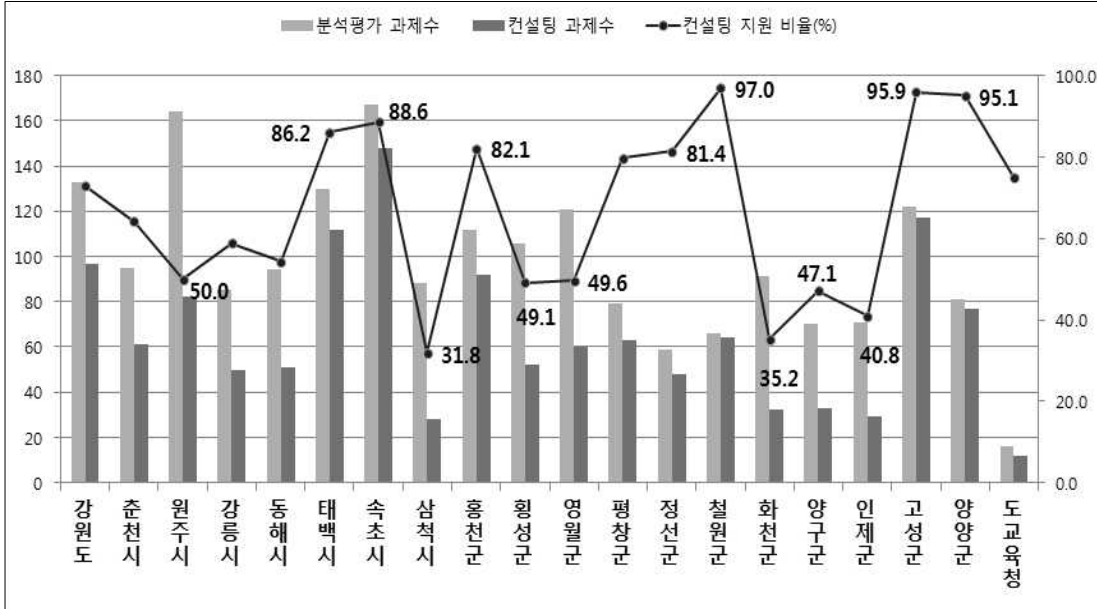
기관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법령	계획	사업
합 계	787	1,019	1,522	2,032	1,950	1,481	2	467
강원도	48	64	91	146	133	98	1	34
시군 합계	739	955	1,431	1,890	1,801	1,369	1	431
춘천시	79	47	107	107	95	63	-	32
원주시	61	110	124	191	164	137	-	27
강릉시	65	49	100	107	85	55	-	30
동해시	39	43	77	104	94	63	-	31
태백시	56	52	130	102	130	99	-	31
속초시	15	51	53	100	167	143	-	24
삼척시	37	79	69	146	88	74	-	14
홍천군	56	73	81	127	112	87	-	25
횡성군	29	53	70	123	106	83	-	23
영월군	36	54	64	85	121	92	-	29
평창군	26	34	68	96	79	52	-	27
정선군	39	53	82	109	59	59	-	0
철원군	33	27	40	71	66	41	-	25
화천군	31	26	63	97	91	67	-	24
양구군	48	52	95	84	70	47	-	23
인제군	28	62	68	77	71	66	-	5
고성군	30	58	101	107	122	90	1	31
양양군	31	32	39	53	81	51	-	30
도교육청	41	17	27	34	16	14	-	2

-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6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결과 보고서, p. 18

□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추진실적

2016년 분석평가 과제 수 1,950개에 대해 1,306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여 컨설팅 지원비율은 67.1%를 나타냈다. 강원도(광역)는 133개 과제 중 97개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여 72.9%의 지원실적을 나타내었다. 시군별로 컨설팅 지원실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철원군으로 66개 과제 중 64개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하였고, 고성군과 양양군 역시 각각 95.9%, 95.1%의 높은 컨설팅 지원이 이뤄졌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팅 지원 현황



-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6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결과 보고서, p. 16

나. 법령 추진 결과

2016년 강원도(광역)와 18개 시군의 제개정 법률안 1,467개 중 제외대상 540개 (전체의 35%)를 제외한 950개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950개 법령 가운데 '개선사항 없음'이 대상법령의 약 68%(643개)를 차지하여 3분의 2 이상을 나타내었고, 자체개선안을 제출한 법령이 3.5%(33개)를 차지하였다. 한편,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통보된 법령은 28.8%(274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은 개선의견이 있는 법령 274개와 자체적으로 개선의견을 제출한 33개 법령을 합한 307개에 한한다.

시군별 개선의견 법령 및 자체개선의견을 제출한 법령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개선안을 가장 적극적으로 제출한 지역은 속초시로 33개 법령 중 9개를 차지하여 27.3%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횡성군 5개(15.2%), 고성군 4개(12.1%)의 순으로 나타났다. 법령 개선의견이 가장 많은 지역은 태백시로 태백시 대상 법령 중 63.5%를 차지한 32개이다. 다음은 홍천군 46.3%(31개), 원주시 45.5%(25개), 철원군 44.4%(16개)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2〉 법령 검토의견 통보 현황

단위 : 개, (%)

기관명	전체	제외대상	검토의견 통보				기타*
				원안동의		개선의견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전 체	1,467	514(35.0)	950(64.8)	643(67.7)	33(3.5)	274(28.8)	3(0.2)
강원도	98	45(45.9)	53(54.1)	37(69.8)	2(3.8)	14(26.4)	0(0.0)
시군 합계	1,306	445	858	567	31(3.3)	260(27.8)	3(0.2)
춘천시	63	24(38.1)	39(61.9)	39(100.0)	0(0.0)	0(0.0)	0(0.0)
원주시	137	82(59.9)	55(40.1)	30(54.5)	0(0.0)	25(45.5)	0(0.0)
강릉시	55	20(36.4)	35(63.6)	22(62.9)	0(0.0)	13(37.1)	0(0.0)
동해시	63	23(36.5)	40(63.5)	33(82.5)	0(0.0)	7(17.5)	0(0.0)
태백시	99	18(18.2)	81(81.8)	49(60.5)	0(0.0)	32(63.5)	0(0.0)
속초시	143	30(21.0)	110(76.9)	70(63.6)	9(8.2)	31(28.2)	3(2.1)
삼척시	74	27(36.5)	47(63.5)	34(72.3)	0(0.0)	13(27.7)	0(0.0)
홍천군	87	20(23.0)	67(77.0)	34(50.7)	2(3.0)	31(46.3)	0(0.0)
횡성군	83	24(28.9)	59(71.1)	45(76.3)	5(8.5)	9(15.3)	0(0.0)
영월군	92	48(52.2)	44(47.8)	27(61.4)	2(4.5)	15(34.1)	0(0.0)
평창군	52	16(30.8)	36(69.2)	23(63.9)	1(2.8)	12(33.3)	0(0.0)
정선군	59	23(39.0)	36(61.0)	26(72.2)	2(5.6)	8(22.2)	0(0.0)
철원군	41	5(12.2)	36(87.8)	20(55.6)	0(0.0)	16(44.4)	0(0.0)
화천군	67	25(37.3)	42(62.7)	37(88.1)	0(0.0)	5(11.9)	0(0.0)
양구군	47	14(29.8)	33(70.2)	31(93.9)	0(0.0)	2(6.1)	0(0.0)
인제군	66	38(57.6)	28(42.4)	15(53.6)	2(7.1)	11(39.3)	0(0.0)
고성군	90	17(18.9)	73(81.1)	48(65.8)	4(5.5)	21(28.8)	0(0.0)
양양군	51	15(29.4)	36(70.6)	23(63.9)	4(11.1)	9(25.0)	0(0.0)

* 기타 : 체크리스트 또는 분석평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례.

-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6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결과 보고서, p. 32.

다. 사업 추진결과

2016년 강원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외대상 사업 및 기타 사업 5개를 제외한 460대 대상사업 중 '개선사항 없음'이 45%(207개)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55%인 253개 사업('자체개선안 동의' 35.2%(165개), '개선의견' 19.8(91개))이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의 이행점검 대상이 된다.

이행점검 대상 사업을 시군별로 살펴보면, 7개 시 지역의 이행점검 대상 사업은 총 120개(자체개선 동의 65개, 개선의견 55개)이며, 11개 군 지역의 이행점검 대상 사업은 총 133개(자체개선 동의 97개, 개선의견 34개)이다.

〈표 3〉 사업 검토의견 통보 현황

단위 : 개, (%)

기관명	전체	제외 대상	검토의견 통보				기타*
			원안동의		개선의견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전 체	465	3(0.6)	460(98.9)	207(45.0)	162(35.2)	91(19.8)	2(0.4)
광역	34	0(0.0)	34(100.0)	32(94.1)	0(0.0)	2(5.9)	0(0.0)
기초 합계	431	3(0.7)	426(98.8)	175(41.1)	162(38.0)	89(20.9)	2(0.5)
기초(시) 합계	189	3	185	65	65	55	1
춘천시	32	1(3.1)	31(96.9)	31(100.0)	0(0.0)	0(0.0)	0(0.0)
원주시	27	0(0.0)	27(100.0)	0(0.0)	25(92.6)	2(7.4)	0(0.0)
강릉시	30	0(0.0)	30(100.0)	2(6.7)	5(16.7)	23(76.7)	0(0.0)
동해시	31	0(0.0)	31(100.0)	0(0.0)	12(38.7)	19(61.3)	0(0.0)
태백시	31	0(0.0)	31(100.0)	25(80.6)	0(0.0)	6(19.4)	0(0.0)
속초시	24	2(8.3)	21(87.5)	0(0.0)	18(85.7)	3(14.3)	1(4.2)
삼척시	14	0(0.0)	14(100.0)	7(50.0)	5(35.7)	2(14.3)	0(0.0)
기초(군)합계	242	0	241	111	97	34	1
홍천군	25	0(0.0)	25(100.0)	1(4.0)	5(20.0)	19(76.0)	0(0.0)
횡성군	23	0(0.0)	23(100.0)	21(91.3)	1(4.3)	1(4.3)	0(0.0)
영월군	29	0(0.0)	29(100.0)	1(3.4)	27(93.1)	1(3.4)	0(0.0)
평창군	27	0(0.0)	27(100.0)	27(100.0)	0(0.0)	0(0.0)	0(0.0)
정선군	0	0(0.0)	0(0.0)	0(0.0)	0(0.0)	0(0.0)	0(0.0)
철원군	25	0(0.0)	25(100.0)	0(0.0)	13(52.0)	12(48.0)	0(0.0)
화천군	24	0(0.0)	24(100.0)	24(100.0)	0(0.0)	0(0.0)	0(0.0)
양구군	23	0(0.0)	23(100.0)	23(100.0)	0(0.0)	0(0.0)	0(0.0)
인제군	5	0(0.0)	4(80.0)	2(50.0)	2(50.0)	0(0.0)	1(20.0)
고성군	31	0(0.0)	31(100.0)	5(16.1)	25(80.6)	1(3.2)	0(0.0)
양양군	30	0(0.0)	30(100.0)	6(20.0)	24(80.0)	0(0.0)	0(0.0)

* 기타 : 체크리스트 또는 분석평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중단된 사례.

- 출처: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2016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종합결과 보고서, p. 35.

| 2 | 이행점검 분석 틀

가. 이행점검의 방향

1) 개념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함에 있어서 이행점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개념정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행점검’이란, ‘이행’과 ‘점검’을 합친 용어로 두 개의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행’(履行)이란 ‘실제로 행함’의 의미로 실천, 실행, 수행과 동의어이며, ‘점검’(點檢)이란 낱낱이 검사함, 또는 그런 검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업이나 계획, 법령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조치나 개선과제로 제시된 사항들이 실제로 수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실제 수행 내용이 어떠한가를 면밀하게 검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행점검의 필요성은 서론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성평등을 목적으로 모든 정부 사업에 대해 시행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단지 분석평가 보고서 작성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 시민의 생활에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당초 취지와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정의 일환이다.

2) 이행점검 방향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에 대한 ‘이행점검의 방향’을 다음 세 가지 측면에서 설정하고, 이 방향에 충실하게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첫째, 대상 영역별 성평등 조치사항이 충실히 구현되고 있는지를 점검·확인하는 것이다. 현행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조치사항은 법령의 경우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로 지표를 세분화하여 탐색한다. 사업은 크게 법령(지침 포함) 반영계획, 성인지예산의 반영, 그리고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등 3개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법령(지침) 개선, 예산 반영 관련된 조치사항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사업내용 및 사업수행 방식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성평등 개선조치 영역에서 법, 제도나 지침 개선이나 예산과의 연계 현상을 면밀히 점검한다. 특히 이행사항들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점검하고자 한다.

둘째, 이행점검의 궁극적 목적이 성평등 실현에 있으므로 성평등 향상과 연계된 이행점검 지표 설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의 필요성 요구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분석보고서 작성, 개선과제 도출 및 개선과제의 실행

등 일련의 복잡한 과정을 포함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개선과제 도출에 그치고, 수많은 개선과제를 제안하였으나 성 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에 문제제기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고, 뿐만아니라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리적 관계와 검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 지표가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 개선조치 사항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이미 성평등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도출하고 있는 성평등 개선조치의 범위 내에서 이행점검 틀이 설정되어야 한다. 다만 성 평등 개선조치의 범주로는 사업 내용에 따라 다양한 개선조치가 어떻게 성평등과 연계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행점검 지표가 구체화 되어야 할 것이다.

나. 이행점검 방법

이행점검의 방법은 실제 사업이 실행되고 있는 현장이나 장소를 방문하여 점검리스트에 따라 확인하는 직접적 방법과 각종 증빙서류나 문서, 사업추진결과 보고서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이행점검표에 표시하여 제출하는 간접적 방법이 있다. 어느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며 적절한지는 각 방법이 갖는 장점과 단점이 있으므로 단점을 최소화하고, 이행점검의 목적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다만 본 이행점검의 방법은 시간 등 여건의 한계상 점검리스트에 따라 '실행' 여부를 담당자가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이행여부를 판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간접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향후에는 이행점검 시행 목적에 맞는 설계를 통해서 방법의 적절성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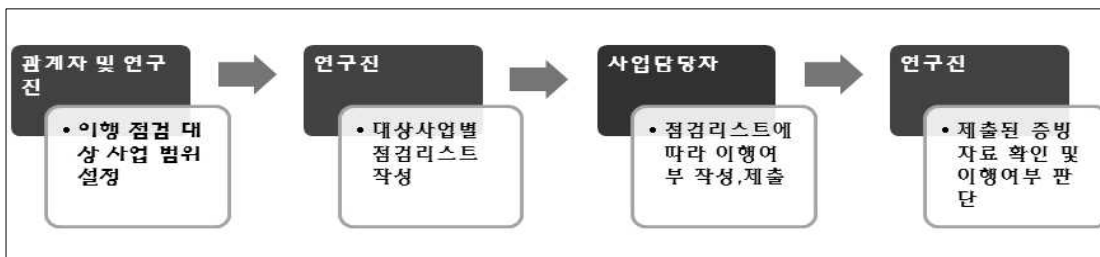
다. 이행점검 절차

이행점검 절차는 크게 네 개의 단계를 거쳐 이뤄졌다. 먼저, 이행점검 대상의 범위와 추진 방향에 대한 설정 단계이다. 성주류화 정책 연구자, 관련 공무원,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이행점검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이행점검 대상 사업 범위, 향후계획 등의 논의를 거쳐 이행점검 계획을 수립하였다.

둘째, 대상사업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해당 사업별로 구체적인 점검리스트를 작성하였다. 이 과정은 사업에 따라 점검되어야 할 내용이 다르며, 구체적인 점검리스트를 통해서 정책개선 이행의 구체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행점검표는 컨설턴트 경험 및 연구 수행경험을 갖는 전문가 그룹(3명)이 함께 작성하였다.

세 번째 단계는 강원도 및 각 시군별로 사업담당자가 직접 해당사업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사업담당자는 사업추진의 주체이므로 점검리스트에 따른 이행여부를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주체이다. 다만 점검리스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서류를 얼마나 충실하게 준비하여 제출하느냐에 따라 이행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사업담당자가 제출한 점검리스트와 관련 증빙자료를 연구진이 다시 확인하여 이행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이다.

〈그림 4〉 이행점검 추진절차



라. 이행점검 틀

1) 법령

법령 이행점검 틀은 기본적으로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 틀에 따랐다. 2016년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평가 항목은 크게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성별균형참여의 세 개 항목으로 구분되었다. 그런데 세 개의 분석평가항목은 실제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즉, 성별 특성에 대한 점검 내용에서 ‘성별 통계 생산’이 모든 정책 수립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별도의 점검 영역으로 도출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성별 특성에 포함하지 않고, 이행점검 영역으로 별도 설정하였다. 또한 이 네 개의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 외의 것을 포함하기 위해 ‘기타’ 영역을 별도로 설정하여 이행점검표를 정하였다.

〈표 4〉 법령 이행점검 영역

법령 분석평가 항목('16년 지침)	점검내용	이행점검 영역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고정관념에 의한 표현 개선 -특정성별을 명시하는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이 반영된 표현 개선 -성역할 고정관념 반영된 표현 개선 -특정조치가 성별고정관념에 따른 경우 개선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된 규정 개선 -성별에 따른 고려가 필요한 규정 마련 -시설설치, 시설개선 사업 등에 성별에 따른 규정 마련	성별 특성
	-각종 실태 및 현황 조사 시 성별에 따른 통계 생산을 자치법규에 명시 - 별지서식의 인적정보 기재란에 성별 기입 등을 통한 성별 구분통계 생산	성별통계 생산
성별균형참여	-위원회 등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자격요건이 특정 성의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 개선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특정성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	성별 균형 참여
		기타

- 출처: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지침 재구성.

2)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이행점검 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틀은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성평등 개선조치에서 제시하고 있는 세 개 영역-법령, 예산, 사업내용 개선-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먼저, '법령'의 이행점검 항목은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분석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성별 구분 및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 참여를 포함하고 있다. 다음 '예산'의 이행점검 항목은 크게 두 가지 점검리스트를 포함하는데, 하나는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와 다른 하나는 예산의 규모는 그대로 이나 예산 구성을 변경하고 있는지의 두 개 항목이다. 다음은 사업내용의 개선에 대한 점검리스트를 살펴볼 것이다.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볼 때,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는 법령이나 예산에 관한 내용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사업내용의 개선에 해당되고 있어 사업내용 개선을 구체화하여 설정하는 것이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틀 구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사업내용의 개선에 대한 이행점검표 작성을 위해서 먼저, 대상 사업의 개선과제들을 검토하고 개선과제의 이행사항을 구체화할 수 있는 점검리스트를 구체화하여 유형화한 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의사결정 과정의 성별 균형참여, 사업수혜자 성별 균형참여, 시설 및 환경의 여성친화적 개선, 프로그램 개선(젠더관점 반영), 성별 통계 생산, 사업수행 방식 개선으로 분류하였다. 이 가운데 의사결정과정 성별균형 참여와 사업수혜자 균형참여는 각각 인적 구성에 있어서 성별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범주로 묶을 수 있으나, 사업의 참여자와 의사결정과정의 참여자는 각각이 갖는 의미와 목적이 다르므로 분류하여 점검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고 판단하여 구분하였다.

한편 사업수행 방식 개선의 경우 성인지성 여부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성인지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 대상자 혹은 사업 수혜자 특성, 특히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여부(예: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단순히 가림막 설치나 기존시설에 대한 개보수 인 경우/ 즉 동일한 사업이라도 여성과 남성의 수요 파악에 대한 노력이 있다면 성인지성 있으나, 이러한 성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는 경우 성인지성 없음), 둘째 관습대로 해 오던 사업을 그대로 하는지 여부(예: 국가금연서비스 사업의 경우 남성근로자 비율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홍보를 확대한다든지, 야간이나 직장대상 금연 클리닉 횟수를 늘리는 사업인 경우 성인지성 없음), 셋째 성별 구분 여부(예: 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시 '성별' 문항 없이 단지 사업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하는 경우 성인지성 없음)에 따랐다.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각 점검항목에 따라 작성된 분석들은 다음 <표 5>와 같다.

〈표 5〉 사업 이행점검 영역

구분	이행점검 항목	세부 지표	비고
법령	성별고정 관념	-성별구분조항이나 고정관념 조항 개선	
	성별균형 참여	-의사결정과정의 성별 균형참여	
	성별 특성 반영	-신체적,사회문화적 차이 등 성별 특성과 관련 조항 개선	
예산	예산 배분 비율 조정	-예산의 성별 배분 비율 조정	
	예산 추가편성	-신규 사업추진 또는 사업 확대를 위한 예산 추가	

구분	이행점검 항목	세부 지표	비고
사업	의사결정 과정 성별균형 참여	-위원회, 심의회 등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 -젠더전문가 참여 확대	(성인지전문가 참여)
	사업수혜자 균형참여	-일자리, 취업지원, 사업체 지원 등 사업 수혜자 확대 -여성대상 전문교육 실시 -남성 참여 기회 확대	(여성역량강화, 젠더관계 변화)
	시설 및 환경 개선	-접근성·안정성·편의성 향상 -여성친화적 공간 또는 시설 개선	
	프로그램 개선	-성별에 따른 장치나 장비 마련 -성인지적 프로그램 발굴, 개발 -남성참여가 제한적 분야의 남성 참여 프로그램 발굴	(신규 사업 및 신규 프로그램 발굴)
	성별통계 생산	-사업 기초자료의 성별 분리 통계 -사업대상자 및 수혜자 성별 통계	
	사업 수행방식 개선	-사업참여 대상 성인지(성평등)교육 실시 -성별 수요조사 또는 사업참여 만족도 조사 -홍보 방식의 다양화	

III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결과

| 1 | 법령

2016년 강원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전체 과제는 1,467개였으며 이중 제외대상 514개 과제, 개선사항 없음 643개 과제, 기타(분석평가서 작성 중단 등) 3개 과제를 제외하고 정책개선 이행점검의 1차 대상이 되는 법령은 자체개선안 33개 과제, 개선 의견 제출 과제 274개 과제였다.

〈표 6〉 2016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현황

단위: 개(%)

기관명	전체	제외대상	검토의견 통보				기타*
			원안동의		개선의견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전체	1,467	514(35.0)	950(64.8)	643(67.7)	33(3.5)	274(28.8)	3(0.2)
광역	98	45(45.9)	53(54.1)	37(69.8)	2(3.8)	14(26.4)	0(0.0)
기초	1,306	445	858	567	31(3.3)	260(27.8)	0

최종적으로 정책개선 이행점검 대상은 자체개선안 33개 과제와 2016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을 통보받은 274개 과제 중 ‘수용’ 194개(70.8%), ‘일부수용’ 15개(5.5%)를 합친 242개의 자치법규(조례 및 규칙)로 확정하였다.

한편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은 수용과 일부수용을 합해 209개(76.3%)로 전체의 약 4분의 3을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4분의 1은 수용하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 7〉 개선의견 수용 현황

단위: 개(%)

기관명	개선의견	수 용		불 수 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중단*
전체	274	194(70.8)	15(5.5)	43(15.7)	22(8.0)
광역	14	8(57.1)	2(14.3)	4(28.6)	0(0.0)
기초	260	186(71.5)	13(5.0)	39(15.0)	22(8.5)

정책개선 이행에 대한 점검 과정은 담당 공무원이 작성·제출한 분석평가서, 이에 대한 주무부서(여성정책 부서)의 검토의견 통보서(이 과정에서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 동의’ ‘개선의견’으로 검토의견이 통보됨), 검토의견 통보서에 ‘개선의견’으로 제출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수용 또는 일부수용으로 작성·제출한 반영결과서에 기재된 개선안을 확인하고 각 개선안을 2017년 9월말 현재 시점에서 자치법규²⁾의 내용에 반영하였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를 활용하여 제개정 사항을 확인하였다.

1) 기관별 정책개선 현황

2016년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로 제안된 개선의견이 자치법규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평가서, 검토의견 통보서, 반영결과서를 공포된 자치법규의 내용과 대조·분석한 결과, 공포된 자치법규에 개선의견이 통보된 274개 과제 중 161개 과제가 정책개선을 이행하여 58.8%가 정책개선 이행률을 보였으며, 자체개선안의 이행률은 33개 중 29개로 87.9%의 이행률을 보여 개선의견으로 인한 이행률에 비해 자체개선안의 이행률이 약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책개선 이행의 정도는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기타로 구분하였다. 한 법령안에 여러 개의 개선안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제출된 개선안이 모두 정책개선으로 이행된 경우도 있고 그 중 일부만 개선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제안된 자치법규 중 이행 및 일부이행 비율은 274개 중 161개 자치법규의 내용이 수정·반영되어 58.8%의 이행률을 보였다. 평균 이행률에 비해 낮은 이행률을 나타낸 자치단체는 강원도 본청과 동해시, 속초시, 원주시, 태백시, 평창군으로 6개 자치단체로 나타났다. 한편, 자체개선안으로 제안된 자치법규는 33개 였는데 이 중 29개의 자치법규에 대한 수정·개선이 이뤄졌다.

〈표 8〉 강원도 및 18개 시·군 법령 정책개선 이행 현황

단위: 개, %

지역	법령수	정책개선 이행					이행률(%) ¹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기타 (중단, 미제출 등)		
전체	합계	307	171	19	97	20	61.9
	개선의견	274	142	19	93	20	58.8
	자체개선안	33	29		4		87.9
강원도	소계	16	3	2	4	7	31.3
	개선의견	14	2	2	3	7	28.6
	자체개선안	2	1		1		50.0
강릉시	소계	13	9	-	4	-	69.2
	개선의견	13	9	-	4	-	69.2
	자체개선안						

지역	법령수	정책개선 이행					이행률(%) ¹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기타 (중단, 미제출 등)		
고성군	소계	25	18	2	5	-	80.0
	개선의견	21	14	2	5	-	76.2
	자체개선안	4	4		-		100
동해시	소계	7	3	-	4	-	42.9
	개선의견	7	3	-	4	-	42.9
	자체개선안						
삼척시	소계	22	16	2	4	-	81.8
	개선의견	13	8	2	3	-	76.9
	자체개선안	9	8		1		88.9
속초시	소계	31	9	3	19	-	38.7
	개선의견	31	9	3	19	-	38.7
	자체개선안						
양구군	소계	2	2	-	-	-	100
	개선의견	2	2	-	-	-	100
	자체개선안						
양양군	소계	13	9	1	3	-	76.9
	개선의견	9	5	1	3	-	66.7
	자체개선안	4	4		-		100
영월군	소계	17	16	1	-	-	100
	개선의견	15	14	1	-	-	100
	자체개선안	2	2				100
원주시	소계	25	7	1	17	-	32
	개선의견	25	7	1	17	-	32.0
	자체개선안						
인제군	소계	13	8	1	4	-	69.2
	개선의견	11	7	1	3	-	72.7
	자체개선안	2	1		1		50.0
정선군	소계	10	8	-	-	2	80.0
	개선의견	8	6	-	-	2	50.0
	자체개선안	2	2				100
철원군	소계	16	7	4	4	1	68.8
	개선의견	16	7	4	4	1	68.8
	자체개선안						
춘천시	소계	0	-	-	-	-	-
	개선의견	0	-	-	-	-	-
	자체개선안						

지역	법령수	정책개선 이행					이행률(%) ¹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기타 (중단, 미제출 등)		
태백시	소계	32	12	1	12	7	40.6
	개선의견	32	12	1	12	7	40.6
	자체개선안						
평창군	소계	13	6	-	7	-	46.2
	개선의견	12	5	-	7	-	41.7
	자체개선안	1	1		-		100
홍천군	소계	33	23	1	8	1	72.7
	개선의견	31	22	1	7	1	74.2
	자체개선안	2	1		1		50.0
화천군	소계	5	4	-	-	1	80.0
	개선의견	5	4	-	-	1	80.0
	자체개선안						
횡성군	소계	14	11	-	2	1	78.6
	개선의견	9	6	-	2	1	66.7
	자체개선안	5	5		-		100

주1: 이행률은 이행, 일부이행을 모두 포함한 비율임

개선의견 및 자체개선을 합친 307개 자치법규 중 190개의 자치법규가 개정되어 61.9%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시군별로 이행률을 살펴보면, 자치법규 개선이행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양구군과 영월군으로 양구군은 2개 중 2개, 영월군은 17개 개선의견 중 16개 이행, 1개 일부이행으로 100%의 이행률을 나타냈다. 반면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인 지역은 강원도 31.3%, 원주시 32%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자치법규 개선의견의 이행수준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여 향후 적극적인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분석평가 지표별 정책개선현황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 지표별 정책개선 이행결과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구분 고정관념, 성별특성, 성별균형참여, 성별통계생산, 기타로 분류하였다. 이 중 기타는 한부모가족지원 등 소외계층 지원 명시나 성평등 교육 실시, 성희롱 교육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한 것과 체크리스트 또는 분석평가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중단을 포함하고 있다.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개선의견이 제안된 자치법규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지표는 성별균형참여로 307개 자치법규 중 179개로 전체 개선법령의 58.3%를 차지하였다. 하나의 자치법규에 개선과제 수가 2건 이상 포함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선과제 수를 ‘건’ 수로 표시하면 총 404건의 개선과제가 제안되었고 이 중 200건이 성별균형참여를 개선내용으로 하고 있어 49.5%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성별통계로 자치법규 수로 보면 307개 중 36개로 11.7%를 나타내지만, 개선의견 건 수로 보면 25%(101건)을 나타내었다. 이는 성별분리 통계의 경우, 자치법규에 포함된 기타 별지의 서식 수정내용에 성별 분리통계를 개선의견으로 제안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기타역시 68개 자치법규에 대한 개선의견이 제안되어 22.1%를 차지하였다. 이는 강원도의 특성상 관광지에 대한 조례가 많아 관광지의 입장료 등에서 지원 대상으로 한부모가족을 포함하는 내용이 개선의견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표 9〉 분석평가 지표별 개선안 현황

단위: 개, 건

구분	법령(개선안*)	해당자치법규	
		개선 의견(개선안)	자체개선안(개선안)
합계	307(404)	274(369)	33(35)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2(2)	2(2)	-
성별특성	22(26)	21(25)	1(1)
성별균형참여	179(200)	156(176)	23(24)
성별통계생산	36(101)	35(99)	1(2)
기타	68(75)	60(67)	8(8) ³⁾

* ()은 개선안 건수를 의미함. 하나의 자치법규에 2개 이상의 개선안을 포함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선안 수가 법령 수에 비해 많으며, 이를 괄호에 표시함.

개선의견에 따른 분석평가 지표별 개선의견 이행 현황은 다음 〈표 10〉과 같다.

개선 의견이 가장 많았던 분석이행지표 ‘성별균형참여’는 전체 개선안 200건 중 124건이 개선되어 62%의 이행률을 보였다. 다음 이행지표 ‘성별분리통계’의 경우, 99건의

3) 자체개선안 중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특성 고려, 성별 균형 참여 항목에 해당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임.

개선안 중 52건이 개선되었으며 52.5%의 이행률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이행률을 보인 지표는 성별특성 역시 개선안 제출 비율이 낮았으며(6.4%), 그나마 이행률도 30.8%로 낮은 편이다. 법령 중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에 대한 개선안은 50%의 이행률을 보였으나 개선안 제출 건수가 2건에 불과하고 그 중 1건이 이행된 것이라 비율의 의미는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법령에서 성별균형참여와 성별통계생산 외 이 두 가지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 외 '기타'는 75건의 개선안 중 32건만 반영되어 42.7%의 이행률을 나타내었다.

〈표 10〉 분석평가 지표별 개선안 이행 현황

단위: 건(%)

분석평가 지표	이행여부(%)			
	합 계	이행	일부이행	미이행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2(0.5)	-	1(50)	1(50)
성별특성	26(6.4)	8(30.8)	-	18(69.2)
성별균형참여	200(49.5)	122(61)	2(1)	78(38)
성별통계생산	99(24.5)	52(52.5)	-	47(47.5)
기타	75(18.6)	28(37.4)	4(5.3)	43(57.3)
합계	404(100.0)	210(52)	7(1.7)	187(46.3)

주: 1개의 자치법규에 2건 이상의 개선안이 제시된 경우가 있어 총 합계가 정책개선 이행 분석대상 307건이 아닌 404건임.

3) 정책개선 이행 사례

법령의 분석평가 지표별 이행의 구체적인 개선 사례 및 미이행의 주요 사유를 확인하고자 한다.

(1)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지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녀를 구분하여 결과적으로 한쪽 성에 불리한 영향이 발생할 것이 예측되거나 특정 성별을 명시한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을 반영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항목이다. 2016년에는 총 2건의 자치법규에서 개선의견이 제시되어 1건이 반영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표 11〉과 같다.

〈표 11〉 성별구분 또는 고정관념 관련 정책개선 이행 사례

자치법규명	주요 개선의견 및 반영결과
인제군 장애인복지 증진조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의견 : 장애인의 복지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결정하는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촉위원 중 반드시 장애인이 1인 이상 포함' 조항 신설,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를 위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으로 제한된 위촉요건을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변경 - 반영결과 : '장애인 포함' 조항만 개선되었으며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개선되지 않았음.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에서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1'00군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건이다. 지원대상이 신생아, 입양아와 함께 부모 모두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항을 결혼이주여성의 경우 주민등록상 바로 등록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최근 부부가 주거지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많아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부 또는 모'로 수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담당자는 이 지원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자체사업이며 내외국인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검토의견 반영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2) 성별 특성

성별특성은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 차이 등이 고려되어 법령에 반영되는 지를 점검하는 항목이다. 성별특성 반영 지표에 해당하는 개선의견은 총 18건으로 이중 6건(33.3%)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개선의견 및 반영결과는 〈표 12〉와 같다. 주요 개선의견은 기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기업인의 우대조치나 여성장애인의 우대 조치 등이 포함되었다.

〈표 12〉 성별특성 관련 정책개선 이행 사례

자치법규명	주요 개선의견 및 반영결과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의견 : 향토학사 입사 기회를 성별로 균등하게 제공하는 것은 성별 간 동등한 지원이라는 측면이라는 점에서 필요한 것이므로 '30명의 범위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 - 반영결과 : 조항 수정

자치법규명	주요 개선의견 및 반영결과
태백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선의견 :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의 개선의견과 마찬가지로의 우대조치로 '용자추천 심사기준'에서 여성기업인 우대 조항 신설 - 반영결과 : 조항 신설

성별 특성과 관련되어 개선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사례는 모두 12건으로 66.7%에 해당한다. '00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서 '연령, 소득수준 등에 따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는 우선 선정 조항에 '성별'을 추가할 것을 개선의견으로 제출하였으나 담당자는 해당 조항을 조례를 삭제하고 향후 세부사항 규칙 제정시 반영하겠다고 의견을 개진하였으나 해당 조항 삭제 후 세부사항 규칙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3)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균형 참여지표는 위원회⁴⁾ 구성시 어느 한쪽 성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거나 위원회 자격 요건이 한쪽 성에 지나치게 불리하게 작용할 경우 조건을 완화하도록 하는 개선안이 주 내용이다. 강원도 전체 법령 개선의견 중 성별 균형 참여에 해당하는 개선의견은 272건 중 156건으로 57.4%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 중 99건이 개선되어 이행률은 63.5%에 달한다. 제시된 개선의견 대부분이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양성평등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해야 한다'고 제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성별 균형 참여의 경우 이와 같은 개선의견으로 반영되었기에 미반영 사유를 중심으로 미개선 법안을 살펴보면 <표 13>과 같다.

4) 2015년 7월 1일 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표 13〉 성별 균형 참여 미반영 사유

미반영 사유	자치법규 및 담당자 의견
위원회 성별 균형 참여 필요성 없음	- '00 투자유치 지원조례' 의 위원회 설치 및 구성 규정에는 특정 성별에 대하여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기업유치의 활성화 및 공정한 평가에 적합한 위원을 위촉하고 있음.
여성전문가 부족	- '00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에서 협의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구성하는 것으로 전제로 규정하고 있고 회원의 구성이 관광사업자나 관광관련 사업자, 관광관련 단체 등으로 대부분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어 구성에 어려움이 있음.
입법예고 등으로 인한 시간부족으로 향후반영예정	- 00군 레포츠시설 관리운영조례 - 00시 도시계획 조례 - 00시 노인종합 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등 다수
관할 상위법령에 성별균형참여 항목부재	- '00군지명위원회조례'에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비에 관한 조례가 정해질 경우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이상' 이란 조항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비에 관한 조례개정은 어려움.
기타	- '00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는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조례로 정한 바가 없음. - '00군 군정발전자문위원 운영조례'에서 담당자는 해당 위원회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합의제 기관 기능이 없어 개선하지 않겠다는 의견 제시함.

(4) 성별 통계 생산

성별통계 생산과 관련한 개선의견은 주로 각종 실태 및 현황 조사 시 성별에 따른 통계 생산을 자치법규에 명시하거나 별지서식의 인적정보 기재란에 성별을 기입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2014년 8월 7일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개정을 추진하면서 성별 칸을 별도로 추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으며 이에 서식 등에 성별을 추가하는 것이 개선의견으로 개선되었다.

관련 서식 수정은 수용이 용이하고 일반적인 성중립적인 개선안으로 인식되어 저항감이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개선 사례가 개선의견 37건 중 13건으로 35.1%에 달한다. 미개선 사유를 정리해 보면 〈표 14〉와 같다.

〈표 14〉 성별통계 관련 정책개선 미반영 사례

자치법규명	미반영 사유
00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현재 법정 서식에 성별표기란이 따로 없으며 상위부서에서 요구하는 통계자료 또한 성별 구분하지 않음.
00군 치매관리 및 지원조례	- 치매관리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 및 그에 대한 실태조사 시 성별, 연령별 통계를 작성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담당자는 시행계획 수립시 참고하겠으며 조례에는 명시하지 않겠다는 의견 제시함.

(5) 기타

분석평가 지표 중 ‘기타’에 해당하는 개선의견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부모 가족지원, 성별과 관계없는 기타 차별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였다. 성희롱 예방교육 등과 관련된 내용 역시 기타에 포함하였다. 주요 정책개선 이행사례는 〈표 15〉과 같다.

〈표 15〉 기타 정책개선 이행 사례

자치법규명	주요 개선의견 및 반영결과
황성군 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가정학습비 지원 조례	-개선의견 : 학습비 지원대상 명사에서 ‘관내·외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둔 부모’로 제한된 것을 ‘만 18세 미만의 자녀’로 확대. 최근 다양한 이유로 인해 탈학교하는 청소년이 증가하고 홈스쿨링 등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으로만 제한할 경우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조치가 아닐 수 있기 때문 -반영결과 : 조항 수정
영월군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개선의견 : 한부모가족에서 여성가구주 비율이 높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아 자연휴양림을 이용할 기회를 높여 여기에서의 성평등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입장료의 면제 및 감면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족’ 포함 -반영결과 : 조항 신설

기타 개선의견 중 미반영 사례 중 ‘00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경우, 한국 사회에서 성 관련 문제가 증가하는 현상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장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기 위한 대책으로 상인에 대한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교육에 대한 지원을 조례에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개선의견에 대해 담당자는 향후 시장상인회에 상인교육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시 보조금 교부조건 내에 동 사항을 반영하겠다고 반영계획서를 제출하였다.

| 2 | 사업 이행점검 결과⁵⁾

가) 사업 이행점검 총괄

2016년도 강원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은 과제 수 총 465개 가운데 제외대상과 기타 중단된 과제를 제외하고 검토의견을 통보한 460개 과제 중 '자체 개선안'과 '개선의견'을 합한 253과제에 대해 정책개선 이행점검을 실시하였다.

〈표 16〉 2016년 사업 이행점검 대상

단위 : 개, (%)

대상 정책	전체	제외대상	검토의견 통보				기타*
			원안동의		개선의견		
			개선사항 없음	자체개선안 동의			
전체	465	3(0.6)	460(98.9)	207(45.0)	162(35.2)	91(19.8)	2(0.4)
광역	34	0(0.0)	34(100.0)	32(94.1)	0(0.0)	2(5.9)	0(0.0)
기초	431	3(0.7)	426(98.8)	175(41.1)	162(38.0)	89(20.9)	2(0.5)

개선의견이 통보된 91개 과제 중 사업담당자가 수용한 과제는 총 73개(수용 53개, 일부수용 19개)로 80.2%였으며, 불수용된 과제는 총 18개(불수용 13개, 중단 5개)로 19.7%였다.

〈표 17〉 개선의견에 대한 수용률

단위: 개(%)

기관명	개선의견	수 용		불 수 용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중단*
전체	91	54(59.3)	19(20.9)	13(14.3)	5(5.5)
광역	2	2(100.0)	0(0.0)	0(0.0)	0(0.0)
기초	89	52(58.4)	19(21.3)	13(14.6)	5(5.6)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해서 자체개선안 162개 과제, 개선의견이 수용된 73개 과제를 합한 235개 과제에 대해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였다. 이행점검표 작성 과정에서

5) 사업이행 점검 결과의 실적 및 현황자료는 강원도 및 18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참여한 것임

개선안이 모호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없는 15개 과제는 점검대상에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20개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시군 담당자에게 확인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강원도 본청, 6개 시, 12개 군이 이행점검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최종적으로 이행점검이 이뤄진 사업 수는 총 178개 과제이며, 본 보고서는 178개 과제에 대하여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행점검률은 전체 80.9%(178/220*100)이며 강원도 본청은 이행점검 대상 과제 2개 중 1개 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자료를 제출하였다. 시 지역은 이행점검 대상 과제 96개 중 이행점검 자료 제출 과제는 77개로 80.0%의 이행점검률을 나타냈고, 군 지역은 123개 중 99개 이행점검 자료를 제출하여 82.1%의 이행점검률을 나타내고 있다.

〈표 18〉 2016년 사업 이행점검 응답 현황

단위: 개, %

구분	이행점검 대상 과제	이행점검표 및 증빙서류 제출 과제	이행점검률(%)
전체	220	178	80.9
광역시	2	1	50.0
기초(시)	95	76	80.0
기초(군)	123	101	82.1

이행점검 자료를 제출한 178개 사업의 정책개선 이행률을 살펴보면, 사업의 개선안을 모두 이행한 '완전이행'과 개선안 중 일부를 이행한 '일부이행'을 포함하여, 135개 과제에 정책개선이 이뤄졌으며, 이행률은 75.8%이다. 광역의 경우 제출된 1개 과제가 이행을 완료하여 이행률이 100%이고, 시 지역은 84.2%, 군 지역은 69.3%로 시 지역의 이행률이 군 지역보다 14.8%p 높게 나타났다.

〈표 19〉 2016년 사업 정책개선 이행 현황

단위: 개, %

구분	이행점검 대상 과제	이행			미이행
		이행	완전이행	일부이행	
전체	178	135(75.8)	52	83	43(24.2)
광역시	1	1(100.0)	1	0	0(0.0)
기초(시)	76	64(84.2)	20	44	12(15.8)
기초(군)	101	70(69.3)	31	39	31(30.7)

이행점검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한 178개 과제의 전체 개선안 건수는 612건으로 사업 1과제당 약 3.4개의 개선안이 제안되었다. 총 612건의 개선안 중 323건의 개선안이 이행되어 개선안 이행률은 52.8%이다. 광역은 1개 과제의 1개 개선안이 모두 이행되어 이행률이 100%이고, 시 지역은 이행률이 52.2%, 군 지역은 이행률이 53.1%로 나타났다.

〈표 20〉 2016년 사업 개선사항 개선 현황

단위: 개, 건, %

구분	이행점검 사업	개선안(1),2)	개선안 이행 건(%)
전체	178	612	323(52.8)
광역	1	1	1(100.0)
기초(시)	76	289	151(52.2)
기초(군)	101	322	171(53.1)

주1) 개선안은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1개 과제에 대해 여러 개의 개선안이 제출될 수 있기에 사업수보다 개선안 건수가 더 많음

주2) 개선안의 단위는 '건'으로 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단위(개)와 구분함

개선안 중 성평등 조치사항의 개선영역에 따라 분류하면 법령(지침 포함) 분야 1건(0.3%), 예산 분야 13건(4.0%), 사업수행 분야 309건(95.7%)으로 나타나, 예산과 법령 개선률에 비해 사업수행방식의 개선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 2016년 강원도 사업 개선사항 개선영역별 이행 현황

단위: 개, 건, %

구분	이행점검 사업	개선안 합계(1),2)	개선영역별 이행 현황		
			①법령 개선안	②예산 개선안	③ 사업수행방식 개선안
전체	178	323(100.0)	1(0.3)	13(4.0)	309(95.7)
광역	1	1(100.0)	1(100.0)	-	-
기초(시)	76	151(100.0)	-	3(2.0)	148(98.0)
기초(군)	101	171(100.0)	-	10(5.8)	161(94.2)

지방자치단체 수준별 개선과제의 성인지성을 어느 정도 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정책개선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 받은 경우에 실제 개선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사업별 이행점검표를 작성하여 확인하게 하였음에도 <표 22>에서와 같이 이행점검 결과 성인지성 '있음'은 절반수준을 넘는 58.2%만 해당되었으며, 개선과제의 내용이 성인지성 '없음'도 41.8%나 차지하여 개선과제의 이행단계에서 성인지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시군별로 시 지역의 성인지성 여부는 '있음'이 44.4%인 반면, '없음'이 55.6%로 성인지적 개선 비중이 오히려 낮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군 지역은 성인지성 '있음'이 70.2%에 달하고 있고, '없음'은 29.8% 수준이어서 시 지역 개선안의 성인지적 적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표 22〉 개선 내용의 성인지성 여부

단위: 개, %

구분	사업수	개선안 수		
		소계	성인지성 있음	성인지성 없음
전체	178	323(100.0)	188(58.2)	134(41.8)
광역	1	1(100.0)	1(100.0)	-
기초(시)	76	151(100.0)	67(44.4)	84(55.6)
기초(군)	101	171(100.0)	120(70.2)	51(29.8)

이렇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도출된 사업의 개선과제들이 성인지성이 미흡한 이유를 다음 몇 가지 측면에서 설명해 볼 수 있겠다.⁶⁾ 첫째는 사업담당자를 포함해서 사업의 성인지성 제고를 돕는 컨설턴트와의 과제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둘째 실제 사업 담당자들이 선정된 이행과제의 성인지성을 높이기보다는 사업자체의 성과를 높이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공존함으로써 성인지적 개선에 소홀하게 된다는 점이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왜 실시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강조되어야 할 대목이다. 셋째, 과제 선정에 있어서 성인지적 개선의 한계가 있는 사업이 선정된 경우 평가결과 개선 이행이 성인지성을 포함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대상사업에 대한 선정 과정에서 보다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6) 이에 대한 견해는 강원도와 시군에서 제출한 개선이행에 관한 증빙자료를 일일이 검토하여 이행점검을 시행한 연구진의 분석임

나. 개선 영역별 이행점검

최종적인 이행점검이 가능한 사업은 총 178개 과제(개선안으로는 총 323건)이며, 이에 대해 영역별(법령 분야, 예산 분야, 사업수행 분야) 이행 현황을 파악하고자 한다.

1) 법령 개선 현황

법령 분야 개선안은 1건으로, 성별 균형 참여에 관한 내용이었다. 강원도 시군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젠더전문가 우선 위촉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공문에 따라 시군에서 도시계획위원 구성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시군의 상위기관으로서 전체적인 정책 분위기를 성인지적 관점을 반영함으로써 여성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개선안은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 중 하나로 긍정적 성과로 볼 수 있다.

〈표 23〉 법령 개선안 현황

단위: 건

구분	법령 개선안	개선 내용
전체	1	
광역	1	관련공문 시행(시군) :시군도시계획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젠더전문가 우선 위촉 협조요청
기초(시)	-	-
기초(군)	-	-

2) 예산 개선 현황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성평등 조치사항으로 '예산'과 관련하여 개선이 확인된 실적은 총 13건이며, 이 가운데 추가예산 확보가 12건이고, 나머지 1건은 예산비율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군별로 시는 75개 사업 중 예산개선 건 수가 3개로 4%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 시는 3건 중 3건 모두 추가예산 확보로 개선하였다. 한편 군은 99개 사업 중 10(10.1%)건의 예산 관련 개선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 1건만 예산비율 조정으로 개선하고 있고, 나머지는 모두 추가예산 확보를 내용으로 한다.

〈표 24〉 예산 개선안 현황

단위: 건

구분	예산 개선안	개선 내용	
		추가예산 확보	예산 배분 비율 조정
전체	13	12	1
광역	-	-	-
기초(시)	3	3	-
기초(군)	10	9	1

예산에 대한 개선안은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학부모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방범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CCTV 설치를 위해 신규예산편성이 이루어 졌으며, CCTV 30대 설치를 위해 약 3억 원의 예산이 신규편성 되었다. 여성의 안전을 위해 치안 사각지대가 없도록 성인지적 관점에서 신규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예산과 연계함으로써 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학부모 4대폭력 예방교육 추진”사업의 확대를 위해서 3백 여 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의 내용이 폭력예방 운동이지만, 보육시설에 입소한 학부모 중 엄마의 교육 비중이 높게 나타나, 아버지의 교육 비중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간의 조정이나 확대가 이루어질 수 있게 예산을 확대하였다고 밝힌 점은 동시에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으로 평가할 수 있다. 즉,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아버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편성한 것은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에서 안전을 위한 시설구축과 관련하여 화장실의 안심벨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성인지적 관점의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로 볼 수 있다.

3) 사업 개선안 현황

사업 분야 개선안 309건을 성인지성 유무로 분석한 결과 성인지성 있는 개선안은 180건(58.3%), 성인지성이 없는 개선안은 129건(41.7%)로 확인되었다.

〈표 25〉 사업 분야 개선안의 성인지성 여부

단위: 개, %

구분	합계	성인지성 있음	성인지성 없음
전체	309(100.0)	180(58.3)	129(41.7)
광역	-	-	-
기초(시)	147(100.0)	66(44.9)	81((55.1)
기초(군)	162(100.0)	114(70.4)	48(29.6)

사업 분야 개선안을 내용의 유형구분에 따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으로 전체 개선안 180건 중 51건(28.3%)을 차지하였다.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은 사업에 대한 성별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거나, 사업에 대한 성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시간대, 장소, 프로그램 운영 등 방식을 변경하거나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다음은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이행점검 과제 중 21.7%(39건)을 차지하였고, ‘사업수혜자 균형 참여’가 20.0%(36건), ‘프로그램 개선’ 17.8%(32건)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례나 규칙 등 법령 성별영향분석평가와 다르게 의사결정과정의 ‘성별균형참여’나 ‘성별 통계 생산’과 같은 내용을 개선내용으로 하는 이행실적은 각각 5.0%(9건), 7.2%(13건)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비중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로 인한 개선 효과는 주로 사업수행방식 개선이나 사업수혜자의 성별균형, 시설 및 환경개선 등과 같이 실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의 개선 등에서 찾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업 분야의 성인지적 개선 내용에 대한 시군별 차이도 발견되었다. 시 지역에서 이행점검 결과, 성인지적 개선과제의 내용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 개선’으로 전체 개선안 66건 중 16건(24.2%)을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다음이 ‘사업수혜자 균형참여’ 14건(21.2%), ‘사업수행방식 개선’과 ‘시설 및 환경개선’이 각각 13건(19.7%)을 차지하여 전체 평균과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군 지역에서는 ‘사업수행방식 개선’이 개선안 총 114건 중 33.3%(38건)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고, 다음이 ‘시설 및 환경개선’ 22.8%(26건), ‘사업수혜자 균형참여’ 19.3%(22건), ‘프로그램 개선’이 14.0%(16건)의 순으로 나타나 시 지역 성인지적 개선 내용의 비중과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 사업 분야의 성인지성 있는 개선안 세부 영역별 현황

단위: 개, 건, %

구분	합계	개선안 세부 영역					
		의사결정과 정성별 균형참여	사업수혜자 균형 참여	시설 및 환경개선	프로그램 개선	성별 통계 생산	사업수행 방식 개선
전체	180(100.0)	9(5.0)	36(20.0)	39(21.7)	32(17.8)	13(7.2)	51(28.3)
광역	-	-	-	-	-	-	-
기초(시)	66(100.0)	5(7.6)	14(21.2)	13(19.7)	16(24.2)	5(7.6)	13(19.7)
기초(군)	114(100.0)	4(3.5)	22(19.3)	26(22.8)	16(14.0)	8(7.0)	38(33.3)

4) 사업 개선안 미이행 사유

이행점검표에는 해당 개선안의 이행을 판단하고 이행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 미이행의 경우 미이행 사유를 기재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점검하였다. 미이행 사유는 다양하였다. 해당 사업이 국비 또는 도비 기반 사업이라 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기에 집행의 재량권이 없어 사업 개선안을 이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많았다. 그리고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 해당 사업은 성인지적 관점에서 개선할 게 없다거나 도민전체 또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별 참여도를 인위적으로 고려할 수 없다고 미이행 사유를 밝힌 경우도 있었다. 시범 운영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2012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고, 공무원 대상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도 계속 진행되어 왔으나 그러한 제도적 노력에 비해 성주류화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지역에 젠더 전문가가 없거나 중증장애인 대상 사업이라 성별을 파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사업 담당자의 인사이동으로 본인 담당 사업이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였는지 몰랐다는 사유도 있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련 내용이 업무 인계인수 과정의 주요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누락되는 경향이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안의 이행률을 높여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무에서 각종 사전평가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인계인수 주요사항으로 의무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V 2016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의 한계와 향후 과제

| 1 | 이행점검 결과의 요약과 함의

법령 이행점검 결과, 개선대상 법령 중 61.9%의 이행률을 나타내어 지방자치단체 평균 정책개선 이행률(2015년 74.6%, 2016년 70.6%)에 비해 낮은 이행률을 나타내었다. 한편, 정책개선의 유형에 따라 검토의견 개선은 58.8%의 이행율을 보였으나, 자체개선안에 대한 개선이행률은 87.9%로 평균 이행률을 훨씬 상회한다. 가장 바람직한 정책개선은 자치법규 담당자가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충실히 작성함으로써 성인지적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체적인 개선과제를 제시했을 때 이행률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법률 이행점검 지표별로 개선이행률을 분석한 결과, 가장 높은 개선이행을 보인 항목은 '성별균형참여'로 전체 개선의견 건 수 중 62%의 이행률을 나타냈으며, 다음이 '성별통계생산' 52.5%의 이행률을 보인다. 지방자치단체 자체사업이나 특성화 사업의 추진근거가 되는 조례나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통해서 의사결정과정에 성별 균형 참여를 명시하고, 성별 통계생산을 통해서 성별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 결과, 2016년도 강원도 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은 과제 수 총 465개 가운데 제외대상과 기타를 제외하고 검토의견을 통보한 460개 과제 중 '자체개선안'과 '개선의견'을 합한 253개 중 이행점검표 작성이 불가능한 32개 과제를 제외하고 220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표를 작성하고 담당 공무원에게 배포하여 이행여부 및 증빙자료를 확인하였다. 이 가운데 강원도 본청, 6개 시, 12개 군의 이행점검을 위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행점검이 이뤄진 사업 수는 총 178개이며, 따라서 본 이행점검 보고서의 이행점검 실적은 제출된 증빙서류 제출을 완료한 178개 과제에 한하여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이행점검률은 전체 80.9%(178/220*100)이다. 시군별로 시 지역의 검토의견이 통보된 과제 수 95개 중 이행점검 자료 제출 과제 수는 76개로 80.0%의 이행점검률을 나타냈고,

군 지역은 123개 중 101개 이행점검 자료를 제출하여 약 82.1%의 이행점검률을 보였다(표 18 참조).

다음, 이행점검대상 사업의 개선안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2016년 이행점검 대상사업의 총 178개 사업에 대해 개선안은 612건으로 집계되어 사업 1개 과제당 평균 3.4건의 개선안이 제출되었다. 제출된 개선안 612건의 52.8%인 323건이 이행되었으며 개선 영역별 이행 완료된 개선안 수는 법령 분야 1건, 예산 분야 13건, 사업 분야 309건으로 사업개선이 전체 개선과제의 95.7%를 차지하여 대부분인 것으로 알 수 있었다(표 21 참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사업추진근거에 따라 매해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 및 평가와 익년도 사업 환류로 이어지는 순환적 사이클을 갖는다는 점에서 사업수행 방식의 개선도 매우 중요하지만 특히 분석평가를 통한 예산과의 연계, 예산 반영에 대한 개선이 사업성별영향분석평가의 가장 큰 추진 이유가 있다. 현재 성인지예산서 작성이 예산배분과 직접 연계되고 있지 못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는 점에서 개선의견에서 예산항목을 충실히 작성할 것을 유도하고, 이행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이행점검표와 함께 증빙자료를 제출한 개선과제에 대한 이행점검은 크게 두 단계로 구성하였다. 첫째 단계는 사업별 개선과제의 성인지성 여부이다. 둘째 단계는 사업내용의 성인지성을 갖는 경우, 구체적인 성인지 영역을 구분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먼저, 이행점검 대상 사업 개선과제의 성인지성 여부를 분류한 결과는 절반을 조금 넘는 58.2%만이 성인지성을 갖는 것으로 점검되었으며, 나머지 41.8%는 성인지성과 무관한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이다(표 22 참조).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의 한계를 내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각 기관에서 제출한 증빙자료를 통해서 이행점검을 확인한 연구진에 따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결과 도출된 개선과제에 대한 담당자 이해부족, 개선과제의 성과를 사업자체의 성과로 동일시하여 초점을 흐리게 된 결과로 분석하였다. 사업에 대한 정확한 컨설팅과 s함께 개선과제의 성인지성 여부가 사전에 판단되어 개선 이행점검에서 성인지성 여부의 문제가 개입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음 개선과제의 성인지성이 있는 경우, 주로 어떠한 측면인지 내용분석의 틀을 의사결정과정의 성별 균형 참여, 사업수혜자 성별 균형참여, 성별 통계 생산, 프로그램 개선, 사업 수행방식 개선 등으로 구분하여 점검한 결과, 역시 사업수행방식 개선, 사업수혜자 균형 참여, 시설 및 환경의 여성친화적 개선에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 이행점검 시스템 비교분석 및 한계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시행 이래 5년 동안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는 모든 정부 정책에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제도의 정착과 동시에 양적인 발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를 통해서 실제 시민의 생활, 특히 여성의 삶의 질 향상이나 여성과 남성의 관계변화를 가져왔느냐, 그러한 변화의 징후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변화라도 있느냐에 대해서는 '단정적으로 그렇다'고 말하기 어렵다.

이렇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의 내실화를 꾀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해 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정책영역의 대상 사업별 성별영향분석평가 뿐 아니라, 실제로 분석평가 결과 개선의견이 반영되고 있는지 이행점검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중앙행정기관의 정책개선 이행점검이 시행되어 왔다. 2014년부터 시행되어 이제 4회째 이행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개선 이행점검은 2016년에 처음으로 실시함에 있어서 익년도인 2017년에 제출한 종합결과보고서를 근거로 추진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이행점검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무원이 작성·제출한 법령·계획·사업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 중 해당 기관 분석평가 책임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서의 개선의견을 개별기관이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에 대한 것이다. 이처럼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으로 추진되는 이행점검과는 별도로 추진한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의 의미와 한계를 점검하고, 그렇다면 향후 어떻게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행점검이 시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이행점검 대상 과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과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행점검이 동일하다. 즉, 이행점검 대상과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작성 대상과제 중 분석평가책임관이 통보한 검토의견서의 개선의견을 개별 기관이 수용하여 개선계획을 수립한 과제이다. 다만, 점검대상 기간에 있어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은 2015년과 2016년의 2년간을 기간으로 하였으나, 본 이행점검은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라는 측면에서 2년치에 대한 이행점검도 충분히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관리가 소홀해질 여지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

두 번째는 이행점검 기간을 언제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이다. 전년도 사업에 대한 이행점검을 익년도 2월에 실시하는 경우, 제도의 성과를 단기간에 파악할 수 없는 경우의 이행점검이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다. 다만, 전년도 뿐 아니라 전전년도 실적까지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맹점을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한편,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번 이행점검의 경우 2016년 사업에 대해 2017년 9~10월 이행점검은 전년도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된 이후여서 실적을 파악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스템과 연동되지 않고 현재와 같이 별도로 추진하는 경우, 이행점검의 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을 가져올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셋째, 이행점검 내용이다. 시스템에 의한 이행점검 지표는 개선완료와 개선진행의 두 가지만 있다. 어떠한 내용으로 개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개선의견에 제시된 대로 개선되었는지, 사업추진과정에서 개선의견이 변형되어 개선완료되었는지 다양한 상황과 변수가 개입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이 어렵다. 반면, 자체적으로 이행점검을 실시한 경우, 이행점검표를 별도로 만들고 그에 따라 점검하였다는 점에서 개선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었으며, 개선의 내용도 성평등의 어떤 측면에서 기여할 수 있는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넷째, 이행점검의 주체의 문제이다. 시스템에 따른 이행점검은 사업담당자가 해당사업에 대한 이행점검 의무를 가지고 실시해야 한다. 따라서 앞서 제시되었던 사업담당자의 자의성이나 혹은 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반면, 성인지 전문가가 포함된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가 운영하는 경우, 이행점검의 내용에 있어서 구체적인

이행점검 지표에 따라 전문성을 가지고 점검함으로써 이행점검 내용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두 개의 시스템이 각각 독자적으로는 많은 한계를 가짐으로써 전문성과 함께 이증으로 추진함으로써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행점검 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

〈표 27〉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에 따른 이행점검 및 자체적인 이행점검 비교

구분	성별영향분석평가 시스템	자체 이행점검 실시	비고
점검대상	2015년과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개선의견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과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개선의견에 따른 개선계획을 제출한 과제	2017년도 이행점검
점검기간	2017년 2월	2017년 9~10월	
점검내용	개선완료 및 개선진행 중 두 개 지표만 점검	-개선 여부 -개선의 방향과 내용을 구체화	
점검주체	사업담당자 및 시스템에 탑재하여 자율관리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 운영	

이상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 결과, 향후 과제의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과정을 보면 특정 시기에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상과제 선정과정에서 성평등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의 참여, 대상과제 선정, 컨설팅 지원과 함께 분석보고서 작성, 검토의견서 작성, 개선 반영계획 등 일련의 지난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며 또 한 해도 마무리 되는 것도 아니다. 지속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개선이 완료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의미가 있는 것은 사업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될 뿐 아니라,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 참여자 등의 생각과 관점을 변화시키는 패러다임 전환에 실제 참여하는 혁신적인 과정이다. 이러한 일련의 복잡한 과정에 의미를 갖게 하는 단계가 이행점검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행점검을 하지 않으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점차 이행점검 단계와 과정에 무게 중심을 옮기기도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이행점검 과정을 보다 체계화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은 그 첫 단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논의에서 제기되었듯이 어떻게 이행점검 체계를 설계 할 것인가에 대한 숙고와 결단이 필요하다.

여기에서는 이행점검 체계 설정의 고려사항이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제안하는 것으로 향후 과제를 같음하고자 한다.

먼저,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 내에 있는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 이행점검 대상 사업도 전년과 전전년을 합친 2년간의 과제 수가 대상이 되고, 시기도 익년도 2월에 시행되는 종합분석 평가결과 보고서 작성 기간에 확인되어야 한다. 다만, 이 과정에서 사업담당자나 자치단체 기관담당자의 자의성과 형식적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이행점검 분석 틀, 이행점검 확인 단계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컨설턴트와 전문가를 참여토록 함으로써 시스템 상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의 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의 중요한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이행점검 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한 모색이 이행점검의 실효성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다. 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끝나기 보다는 이행점검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성과를 드러내고, 홍보하고 잘 된 사례나, 시행과정의 교훈을 알 수 있도록 사례집 등을 통해서 널리 알리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충실히 수행한 사업담당자, 참여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상(사회적, 경제적 등)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손영숙·이원형(2016). 2015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손영숙·김선희·노경혜·이원형(2015). 2014년 경기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현황 분석.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여성가족부(2017).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 여성가족부(2017). 2017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여성가족부(2016).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지침.
- 윤지영·박해숙(2017). 2016년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여성가족부.

Ⅱ. 토 론

1.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

_ 광영승 (강원도의회 의원)

2.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제시

_ 김복자(강릉시의회의원)

3. 강원지역의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몇가지 제언

_ 정유선(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 :
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4.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및 개선대책

_ 손인주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

5.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장의 고민과 제언

_ 전순아(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성별영향분석평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때

곽영승 (강원도의회 의원)

-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 : 성인지(gender-sensitive),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 지난 대선기간 중 한 정당의 경선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인 후보에게 ‘성인지예산’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해 답변을 못하였으며, 이를 기사화한 중앙일간지는 ‘성인지’를 ‘성인 잡지’로 작성, 그 다음날 정정 보도를 한 일이 있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비롯한 국가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정치인들의 무관심과 언론의 몰이해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할 것임.
-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반성의 지점이 있음. 강원도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성인지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의원의 수는 소수일 것임. 토론자도 도의회 양성평등연구회 활동을 하기 전에는 위에 기재한 용어들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으며, 현재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는 2005년부터 시범실시 하였고, 관련법이 2011년 제정되어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이미 상당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의회의 관심은 적은 편임. 한편 강원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정책개선 이행점검 결과를 보면 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실천하느라 수고한 공무원의 노고에 비해 성과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성별영향분석평가와 함께 성 주류화(법규, 정책, 예산, 제도 등의 영역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와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전반에서 성평등을 이루는 것)의 주요한 도구인 성인지예산서는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기에 그나마 의원들의 관심 대상이 되기도 함. 실제로 강원도의회에서 성 주류화 관련 발언은 모두 성인지예산에 관한 것이었음.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 중 일부는 성별영향분석평가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것인데, 의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와 성인지예산을 관련지어 발언한 사례는 없었음. 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임.

-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주류화 달성의 수단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의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가 시급하며 제도와 전략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 나의 성인지 감수성을 키운 건 팔할이 양성평등연구회

- 양성평등연구회는 강원도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책 개발방향 연구와 도내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7. 6월 출범. 김금분 위원(회장)을 비롯하여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음.
- 연구회 발족 후 성평등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찾고 실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몇 차례 모임을 진행하였음.
 - 젠더아카데미 개최 : 성평등 전략으로서의 성 주류화, 도내에서 운영되는 성 주류화 제도 현황에 대한 강의 및 토론 진행. 연구회 소속 회원뿐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의원들이 대거 참여하여 성평등에 관한 의원들의 관심과 제도 개선의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음.
 - 성평등 정책 연구기관 방문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충북여성재단 등을 방문해 성평등 의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교환하고 성주류화 발전방안을 모색. 연구기관 관계자와 성평등에 대한 정책연구 및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성주류화를 위한 실천전략에 대해 논의했음. 지역의 성평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행정과 의회 뿐 아니라 여성정책 연구기관의 역할, 주민참여가 중요함을 인식.

□ 고민에 실천력을 더하면 성평등한 강원 실현

아래의 고민과 실천요구 사항은 행정과 의회 모두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통해 강원도정의 성평등 수준을 높여나갈 수 있을 것임.

1.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의 연계 :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성인지예산서에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가 반영되어야 함. 따라서 두 제도는 밀접한

연관성이 있으며, 이 두 제도의 연계를 위해서는 평가 일정을 엄수하고, 부서(여성정책부서와 예산부서) 간 원활한 연계 필요함. 의회의 성인지예산 제도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에 관한 심의를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서 작성의 실질적 효과 제고할 수 있을 것임.

2. 성인지적 성과 관리를 위한 환류 체계 확립 : 도정의 성평등 목표-성과목표-지표의 계층적 구조 확립하는 것이 필요함. 이러한 계층적 구조에 대한 고민과 점검 없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서 작성으로는 강원도의 성평등을 제고하기 요원함. 나아가 재정전략·중기재정운용의 성인지적 접근이 필요함
3. 성별 구분 통계를 비롯한 성인지통계의 지속적인 관리 : 정책 통계(정책수행(예산집행) 관련 통계 자료)의 성별 분리 필요. 기본적인 성인지통계가 없으면 지역별 성평등 이슈 정리에 기반한 성평등 목표 제시 불가능
4. 젠더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성평등 정책 실현 필요 : 주민의 성평등 인식과 성평등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획·소통·협업 능력 중요. 각종 조례에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 및 강화 필요
5. 성 주류화 관련 교육 강화
 - 지방의회 의원의 성평등 교육 필요 : 지금까지 광역 및 기초의원 대상 교육은 필요시 수시로 의회사무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형태였으나, 강원도의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의원 대상 성 주류화 교육을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 교육 강화 : 의회와 달리 행정에는 법령에 근거해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성 주류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공무원의 '성별로 관계 없는 사업'이라거나,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성별영향분석평가가 필요 없다는 인식은 성별영향분석평가 교육의 효과를 의심하게 함. 따라서 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임.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특정정책에 대해 그 정책이 성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결과적으로 어느 한 성에 차별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를 제거하거나 결과적인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개선안을 마련하여 정책을 실시하는 것임. 즉, 대상이 도민 전체라고 해서 성평등하다고 할 수 없으며 그 결과가 남녀 모두에게 평등할 때 성평등한 정책이라고 할 것임.

6. 양적인 증가를 넘어 질적인 성취 점검 : 발표자료에 의하면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양적인 성장이 성 주류화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한편 과제수의 증가가 능사인지 고민이 필요할 듯. 분석평가서를 통해 제안된 개선안에 대한 실행력을 높이는 것이 제도의 성공이 아닐까 생각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을 대상과제로 삼을지, 개선안의 실행을 어떻게 점검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7. 성 주류화의 성공적 정착과 이를 통한 성평등 강원도 실현을 위한 성 주류화 종합계획 필요

※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서울시) 참고

서울시는 올해 초 서울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를 토대로 성평등 도시 구현을 위해 시 조직 개편 등을 포함하는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

- 공무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전 부서(본청 전 31개 전 부서, 3개 사업본부, 44개 사업소)에 총 270명의 **젠더책임관·젠더담당자 지정**
- 간부직 공무원 등 교육파급효과가 큰 직원을 우선 교육대상으로 선정해 집중 교육
- 직원들이 실제 업무에 적용 가능한 **‘젠더 10계명’** 개발
- 연 1회 성인지 관련 반영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해 직원들과 공유
- 시 산하 21개 투자출연기관의 **여성 비상임이사 비율(22.2%)을 40%이상**으로 확대
- 5급 이상 여성관리자 비율(2016년 현재 20.8%. 전국 평균 12.6%)을 **‘여성 승진목표제 운영 계획’**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대
- 주요 정책을 심의·결정하는 160개 서울시 위원회 중 여성위원 비율이 40% 미만인 68개 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40% 이상**으로 확대. 여성 위원을 위촉하지 못할 경우 여성 위원 위촉 때까지 공석 유지
- 성인지예산이 시 전 부서에서 고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부서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은 성인지예산 수립하는 **‘부서별 성인지예산 목표제’** 추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제시

김복자(강릉시의회의원)

| 1 |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의 지속가능성이란?

1995년 북경여성행동강령 이후 젠더주류화 전략의 기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예산, 성인지통계 등이 사용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제도가 지역 성평등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생각 해왔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 된지 5년이 지났음에도 가장 중요한 정책개선 이행률이 매우 낮은 것에 대해 안타까움이 많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공무원이 훌륭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 마련한 개선안을 실제 정책에 얼마나 반영하는가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정책 시행 전 성별요구도와 성별형평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반해 개선안을 도출한 후 정책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이루어낼 때 제도의 지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이다. 해마다 적지 않은 예산, 인력, 시간 등을 투입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시행한 결과가 정책의 성평등 제고라는 실질적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를 위한 제도에 머물게 된다.

주제발표를 통해 본 강원도의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행점검의 결과는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체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속가능성을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간의 컨설턴트 경험과 기초의원의 활동을 통해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2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 1) 강원도청의 경우 기관담당자가 개선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용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 필요. (조례 등)

- 강원도는 법령 및 사업에 대해 센터가 자체개선안 동의나 개선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담당자가 '개선사항' 없으므로 최종 통보한 것이 사업의 경우 94%를 넘었다. 강원도의 경우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가 증가하면서 분석평가서를 작성하는 공무원도 증가하고 전년도에 분석평가서를 작성하였던 사업이 다시 대상과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 전년도 분석평가 개선 사항을 일부 반영 완료 한 부분도 있다. 공무원이 1차로 개선안을 제시하고, 컨설턴트가 2차로 컨설팅하는 개선의견에 대해서 강원도 기관담당자가 자체개선안에 대한 단 1건의 동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도 운영의 과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관담당자(혹은 담당부서)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으로 분석평가서 작성 과정에서 도출된 개선안이 이행 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제도의 허점이라고 할 수 있다.
- 현재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가 제정(2017. 9. 29)되었고 제16조제1항에 '도지사는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분석평가책임관과 실무자의 지정)고 명시하고 있다.
- 구체적 이행사항에 대해 관련 조례에 삽입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 조례안'(2017. 11.10)에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사업이나,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한 성평등 문제와 연관이 있는 사업, 교육, 스포츠,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대해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 할 수 있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전담인력 배치 필요.

- 강원도의 경우 기관담당자들이 계속 바뀌어 왔다. 담당자의 경우 일반 업무의 부담이 있어 분석평가 업무에만 집중하기 힘들다. 각 실무부서와 유기적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해야 실행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전담인력의 아웃소싱을 통한 젠더 관련 전문가 채용이 필요하다. 경기도 광역 및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젠더 전문가를 전문관으로 채용한 사례가 있다.

3) 지방의회에서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에 대한 관심 및 구체적인 심의 필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법령(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을 말한다)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에 대하여 분석평가를 실시하게 되어 규정하고 있다(성별영향분석평가법 5조1항).
- 따라서 지방의회의 시·군 조례안 심의에 있어, 집행부 발의 조례안은 반드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받게 되어 있다. 조례를 제·개정 할 때, '참고사항'에 신·구문대조표, 예산조치, 관계법령, 그밖의 사항에 입법예고,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내용을 기재 해야 하나, 규제심사는 '의견없음', 또는 '심의대상 아님'으로 기재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없음'으로 많이 기재하는 경향이 많다.
- 이는 공무원들이 이 제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반영 한 의견에 대해서도 터치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당초예산 심의, 결산 등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사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업은 성별영향분석평가 한 사업인데, 사업개선 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에 대한 예산이 반영 된 게 있습니까?" 등이다(행감에서는 먼저 자료를 요구하고 감사를 하면 좋을 것이다).

4) 공무원의 수요자 마인드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분석평가 항목을 기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가장 많이 이해를 달리하고 있는 것이 '성별요구도'이다. 성별요구도는 그 사업의 수혜자가 성별에 따라 수혜여건이 달라질 수 있는 것에 대한 사회문화적·경제적·생물학적 차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공급자의 입장으로만 생각해, "이 사업은 남녀 차별을 두고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므로 해당없습니다" 라고 기재한다. 수혜자 입장에서 생각이 필요하며 특히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강화해야 한다.

강원지역의 성주류화 제도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몇가지 제언

정유선(강원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 컨설턴트·한국성인지예산네트워크 공동대표)

2011년 9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제1조)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2012년 3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는 2002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관련 조항이 신설 된 후에 2005년부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광역)를 대상으로 시행되기 시작하여 2006년 기초자치단체, 2007년 시·도 교육청으로 확대되었다. 이 법에 의하면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제2조 제1호)” 이 법령에 따라 강원도에서도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 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12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 이후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제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강원도 본청 및 시·군, 강원도교육청을 포함한 강원도 전체의 과제 수가 2012년 787개 과제에서 2016년에는 1,950개 과제로 확대되었다(2016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예산제도 등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공무원 직무교육이 년 4시간으로 의무화 되면서 공무원들의 성인지 감수성과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는 제도 도입초기에 비해 높아졌다. 그러나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양적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공공정책의 성평등 실현과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여성 참여를 높이고 여성의 역량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전통적인 성별분업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성 주류화는 확산과정에서 각 나라들마다 서로 다른 정의를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 적용되었다. 또한, 전환의 잠재력은 사라지고 행정기구의 절차적 과정과 도구를 통한 정책실행 수준으로 축소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다.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강조하고 여성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고자 하는 성인지 정책이 현실 사회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성평등을 향한 정책이기 보다는 전통적인 성별분업에 기초한 여성의 요구를 반영하거나 남성과의 단순비교에 기초한 동등성, 같아짐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에 성주류화가 가부장적 권력관계가 체계화된 젠더질서의 변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재경·김경희, 2012: 6). 그렇기 때문에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제도를 운영하는 추진동력 간 상호협조와 지원, 시민들의 감시를 통한 환류점검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인식으로 중앙부처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중 정책개선이 제안된 과제를 대상으로 이행점검이 시작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제안된 개선과제가 실제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이행점검 연구가 활발해지고 있다(손영숙외, 2015; 임우연·이경하, 2015 등)는 점은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강원지역의 이행점검 결과를 연구 한 것 역시 발전적 성과라고 생각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가 법제화 이후 모든 지자체에서 양적 성장을 가져온 것은 사실이나 지역의 상황에 따라 성평등 목표의 설정 수준이나,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과제 선정 및 정책개선안의 도출 정도, 정책 환류 및 이행실적 모니터링의 수준의 편차가 크다. 그러므로 강원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강원지역에 맞는 제도운영방식과 이행점검 시스템을 모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두 분의 연구 발표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GIA시스템의 전문가검토의견 형식의 문제이다.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 계획서제출 건수에 대한 정량적 평가 지표로는 성평등 목표달성 여부를 검증하기 어렵다. 특히, 자체개선안동의로 검토된 평가서에 대해서는 사업담당공무원이 전문가의 컨설팅 받은 후 분석평가서에 개선내용을 반영해서 작성한 분석평가서를 제출하면 컨설턴트는 자체개선안 동의로 검토의견을 내는 형식으로 GIA시스템은 연계되어 있으나 이 개선안이 실제 사업에 반영되어 예산이 배분되고, 사업수행방식의 개선으로 이행되었는가를 확인 하는 단계는 없다.

둘째, 이행점검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 주체의 문제이다. 지금처럼 담당공무원이 직접 작성하는 체크리스트형식의 이행점검이 실효성이 있는가의 문제이다. 특히, 사업과제의 경우 사업수행방식의 개선의견을 수용했는지 아닌지는 실재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강원도에서도 시민모니터링단의 운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예산확보와 모니터링단의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시민단체와 성별영향분석평가 센터와의 협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한 거버넌스 모델도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이행점검 결과 사업과제에 대한 개선안 중 성평등 조치사항이 법령(지침 포함) 분야 1건(0.3%), 예산 분야 13건(4.0%), 사업수행 분야 309건(95.7%)으로 주로 사업수행에 대한 개선안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사실, 조치사항의 개선안인 사업수행방식의 개선을 위해서는 법령과 예산분배가 연계되어야 가능한 것이 많다. 컨설턴트들이 사업과제에 대한 개선안을 작성할 때 법령과 예산 부분을 연계해서 개선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컨설턴트들의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하다.

넷째, 성주류화 정책의 환류의 문제에 있어서는 의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의 연계가 없이는 환류가 불가능한데 지방의회 의원들의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이 매우 낮은 것이 현실이다. 양성평등 또는 여성정책은 늘 여성의원들만이 관심을 갖는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의원들의 관심과 협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이다.

다섯째, 성별영향분석평가 보고대회나 이행점검 토론회 등을 통해 성주류화 정책의 결과를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행점검의 결과를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기초의원들에게도 보고하여 성주류화 정책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언론과의 협력도 매우 중요한데 특히, 성별영향분석평가 우수사례를 통해 성주류화 정책이 생활 속에서 무엇을 바꾸어 냈고 그것이 지금 내 삶을 어떻게 성평등하게 만들어 주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보도하여 시민들의 성주류화 정책의 체감도를 높여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추진체계의 문제이다. 성주류화 정책은 담당자의 전문성과 사업수행 경력이 매우 중요한 조건인데 지금과 같이 인사발령이 잦은 행정체계에서는 시간이 지나도 늘 제자리걸음일 수밖에 없다. 성별영향분

석평가 뿐 아니라 성인지예산, 성별분리통계 생산, 성평등교육 등 성주류화 정책의 전략적 도구들이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성주류화 정책을 전담하는 전담부서가 필요하다. 전국에서 우수사례로 평가받는 지역들의 사례를 보면, 대구시의 경우 양성평등 전담팀과 대구성별영향분석평가센터와 긴밀한 협력으로 성주류화 정책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고, 충남 아산시는 시장 직속(국장급) 성평등정책 전담공무원이 인력과 예산을 가지고 정책 전반을 책임지고 있다. 서울수도 외부 공모를 통해 젠더전문가가 3명이 팀을 이뤄 성평등정책을 담당하는 방식으로 성주류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강원도도 이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행정체계 안에 젠더전문가가 들어가고 독립된 부서에서 1년 내내 성주류화 정책을 지자체의 모든 사업에서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과정을 통해 담당공무원들을 설득하고 독려하면서 공무원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이 제도의 운영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는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

성주류화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비롯 분석책임관, 기관담당자, 사업담당자, 전문컨설턴트의 제도이행을 위한 의지와 협력, 외부추진동력인 기초의원, 지역언론, 지역시민단체의 관심과 이행요구가 더해질 때 원래 이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이 제도의 원래 목표인 지역성평등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 현황 및 개선대책

손인주 (강원도 여성청소년가족과 과장)

||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 개요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목적

- 정부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체계적·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실질적인 성평등 실현
- 정책의 성차별적 원인을 분석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정책 추진 체계 확립
- 정책 수요자의 성별 특성에 기반한 정책실행으로 국민 만족도 제고

□ 법적 근거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및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 법제업무 운영규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 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 (강원도양성평등기본조례 제38조)

□ 추진경과

- 여성발전기본법에 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조항 마련('02)
 - * 9개 기관(10개 과제)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04)
-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 '사업'을 대상으로 본격 실시('05)
- '06년 기초자치단체, '07년 시·도 교육청을 대상기관으로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정('11.9.15.) 및 시행('12.3.16.)
 - * 사업 → 제·개정법령, 계획, 사업으로 대상정책 확대,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제도화 등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4.3.24.) 및 시행('14.9.25.)
 - * 공표제 도입 및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에 '시행중인 법령'도 포함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5.2.3.) 및 시행('15.8.4.)
 - *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 등
 - * 강원도는 양성평등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로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개정('16.12.20.) 및 시행('17.6.21.)
 - * 지방자치단체의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근거 마련,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에 따른 의견표명 제도 도입,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지정 근거 마련,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정 범위 명확화
- 강원도성별영향분석평가조례 제정('17.9.29.) 및 시행('17.9.29.)
- 대상 정책(법 제5조 및 영 제2조)
 -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안
 -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
 - 중앙행정기관의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 적용 기관(법 제2조)
 - 중앙행정기관 : 부·처·청, 위원회 등
 - 지방자치단체 : 시·도, 시·군·구, 시·도 교육청
- 실시 방법(법 제18조 관련)
 - 성별영향분석평가시스템(<http://gia.mogef.go.kr>)을 통해 분석평가의 모든 절차 진행

||| 성별영향분석평가 운영 및 지원체계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법 제13조의2, 조례 제10조~제14조)

- 성별영향분석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
- 위원회 기능(다음사항 심의·조정)
 - 분석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의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 분석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원 구성(위원장 : 행정부지사, 부위원장 : 호선)
 - 당연직 : 양성평등책임관, 분석평가책임관, 성별영향분석기관 대표
 - 위촉직 : 도의회 추천 도의원. 분석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여성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한 사람, 성인지 예산 전문가

□ 분석평가책임관 및 실무자(법 제14조, 영 제12조, 조례 제16조)

- (분석평가책임관 지정)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분석평가 업무 관련 소속 국장을 분석평가업무를 총괄하는 분석평가책임관으로 지정
- (분석평가책임관의 역할) 분석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 분석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 분석평가결과의 정책,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반영, 분석평가 교육, 분석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및 그 밖의 분석평가에 관하여 법령이 정하는 사항 등 총괄
- (실무담당자 지정) 해당기관의 분석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중에서 실무담당자 지정, 실무담당자는 분석평가책임관의 업무보좌하여 기관별 분석평가 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법 제17조, 영 제14조)

〈평가기관의 기능〉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지원

- 해당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에 대한 상담·자문
- 성인지예산과 성별영향분석평가와의 연계를 고려한 대상정책 선정
- 성별영향분석평가의 결과 반영에 대한 모니터링
- 대상정책별 개선안 도출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보고서 작성 지원
- 지방자치단체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정책선정 및 정책개선추진 컨설팅 지원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교육 지원
- 지역별 컨설턴트 운영·관리 및 역량강화 지원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DB 구축 및 관리운영 지원
- 지역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자료 발간
- 지역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제도 발전 포럼 개최
-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예산 관련 연구개발
- 지역별 성별통계 관리 및 사업수행, 실적보고 등
-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가기관의 지정〉

- 지정권자 : 여성가족부장관
- 지정구분 :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지역성별영향분석평가기관
- 지정기간 : 3년 이내
- 지정대상 : 국공립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자체출연연구기관, 양성평등 관련 학술업무를 수행하는 공익법인

III | 성별영향분석평가 추진현황

□ 연도별 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현황

(단위 : 건)

구 분	합 계*	조례·규칙	계획	사업	비고
2014년도	1,522	1,134	5	383	
원안동의	861	637	2	222	
개선의견	128	60	2	66	
2015년도	2,032	1,683	6	343	
원안동의	1,578	1,262	5	311	
개선의견	111	83	-	28	
2016년도	1,934	1,467	2	465	
원안동의	1,046	676	1	369	
개선의견	365	273	1	91	
2017년도**	1,870	1,346	6	518	
원안동의	848	576	3	269	
개선의견	328	257	3	68	

* 합계에는 제외대상 통보된 과제 등 기타의 사유가 포함되어 있어 원안동의, 개선의견 합계와 일치하지 않음.

** 2017.11.20.현재. 성별영향분석평가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검토 단계에 있는 과제 다수

□ 2017년 주요 추진 실적

-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대상사업 선정 : 98개 과제
 - 강원도 양성평등위원회 성별영향분석평가 분과위원회 개최 : 2017. 4. 6
- 강원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정·시행 : 2017. 9. 30
- 성별영향분석평가교육 실시 : 3회, 391명(5급 145, 6급이하 246)
 - 성인지 감수성 제고, 성별영향분석평가 이해도 제고 및 전문성 함양
 - 상반기 : 사업부서 5급이상 관리자 및 사업담당자 대상
 - 하반기 : 전 직원 대상

| IV | 실태 및 문제점

- (사업부서의 관심도 미흡)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여성만을 위한 제도라는 인식, 법령을 운용하는 부서만의 고유사무라는 인식, 사업부서에서는 본연의 고유사무 외에 협조사무를 추가로 해야 하는 업무 부담감, 업무 담당자의 잦은 교체에 따른 업무 전문성 미흡 등으로 인해 분석평가사무를 처리하는데 실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음
 - * 분석평가 실시 및 교육실적이 부서평가(BSC) 지표로 설정되어 있음에도 부서(장)의 관심도는 미흡한 실정임
- (인프라 관련)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인력의 업무과중 또는 잦은 교체로 전문성 확보가 어렵고, 분석평가 컨설팅 및 관련예산 확대 필요
- (분석평가 절차 관련) 분석평가 대상 중에서 조례·규칙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통과절차로 되어 있어 정착되었으나, 사업의 경우 대상과제 선정부터 이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주무 부서(여성청소년가족과)가 사업별로 일일이 사업부서와 소통을 해야만 하는 실정임

| IV | 개선대책

□ 전문성·역량 및 공감대 형성·관심도 제고를 위해

- 부서관리자 및 업무 담당자 교육 확대 강화 : 연 2회→ 연 4회
- 분석평가 정책개선과제 홍보 및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신규) : 포상
- 관련 포럼 운영 활성화 및 토론회 개최 적극 유도 및 추진
- 성별영향분석평가 전담공무원(외부전문가 또는 전문직위제 등) 확보 추진
- 분석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 부서 부서장(또는 주무담당 사무관)을 분석평가담당관으로 지정 추진 (조례 개정 또는 시행규칙 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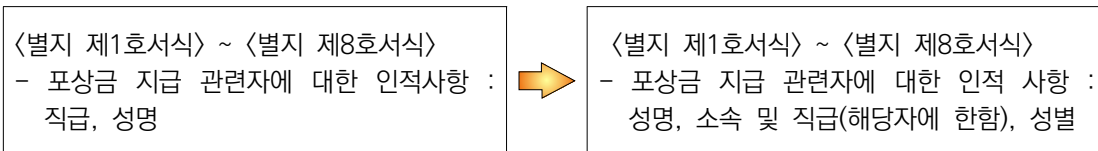
□ 성별영향분석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 (소통 및 협업 강화)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의견 수용율 및 이행 등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컨설팅 및 분석평가 과정에서 컨설턴트, 주관부서 및 사업 부서 담당자 간의 이해와 소통 강화 및 부서장의 관심도 제고 추진
 - * 분석평가 과정에서 간담회, 워크숍 개최 등
- (제도 개선) 성별영향분석평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분석평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행을 제고 추진
 - * 사업의 경우 개선의견 반영결과를 반드시 주관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예산편성과정에서 분석평가가 가능하도록 절차적인 개선 방안 연구
- (정기적인 이행점검) 행정업무에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정기적 이행점검 추진(민·관 공동 모니터링 등)

성별영향분석평가 주요 개선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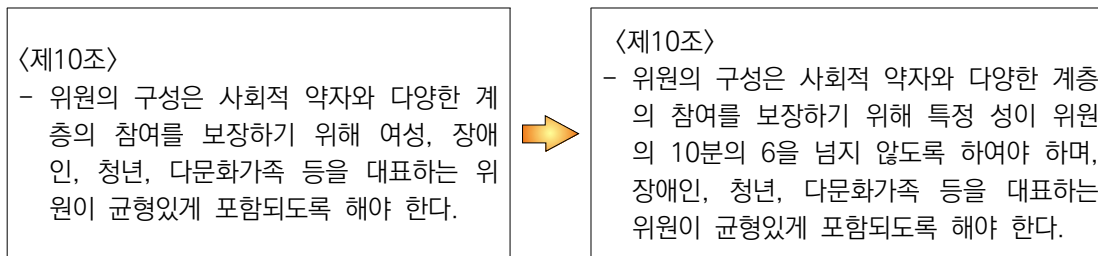
○ 강원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2017)

-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는 별지 서식 변경 및 성별 통계 생산 필요



○ 강원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2017)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 제10조 제2항을 수정



○ 도 장애인 체육회 지원사업(강원도 체육과, 2016)

- 검토의견 : 장애인 생활체육인에 대한 성별 통계 생산 필요
- 반영의견
 - 도 장애인체육회 지원사업 중 각종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장애인 체육선수들의 성별 통계 산출을 위해 강원도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성별 통계 구축 가능 여부와 통계산출을 위한 효율적 확보 방법 및 기본데이터 구축방안에 대한 세부 협의 후 성별통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 도시계획도로개설 및 개선(강원도 지역도시과, 2016)

- 검토의견 : 도시계획위원회에 젠더전문가 위촉 필요
- 반영의견
 - 위원구성 한정(30명)으로 그간 여러단체에서 특수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이 수립될 있도록 요구된 사항들로 관련 단체 등에 도시계획 관련분야 전문가의 위촉 의뢰시 적극 반영

성별영향분석평가 현장의 고민과 제언

전순아(속초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실무담당자)

